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1.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개요	<p>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p> </div>	<p>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p> <p>④제2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p> </div>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대상	<p>II. 협의 대상</p> <p>3. 협의 제외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예산변동)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사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략〉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②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 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 (단년도 사업)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 사업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II. 협의 대상</p> <p>3. 협의 제외 대상</p> <p><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변동 ●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국회·의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년도 사업) 사업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대상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반력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정책 <p>☞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 개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p>	<p>●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지자체 사업 중 정부 사업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신설한 경우, 정부 사업 기준 변동(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으로 지자체 사업내용의 변경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단, 지자체 사업 지침 및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 명시)</p> <p>☞ 예 : 00시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 지침에 지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 사업 변동(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00시의 동일내용이 자동 변경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반력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관련 수단·시설·인력 지원정책 <p>☞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 개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 (단, 주민대상 교통비 지원(요금감면 등) 사업은 협의대상)</p>
협의 절차	<p>Ⅲ. 협의 절차</p> <p>1. 신설·변경 협의요청</p> <p>● (협의요청기한)</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7월말까지 제출</p>	<p>Ⅲ. 협의 절차</p> <p>1. 신설·변경 협의요청</p> <p>● (협의요청기한)</p> <p style="text-align: center;">〈생략〉</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p>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절차	<p><신 설></p>	<p>※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97)</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p> <p>※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4">주요내용</th>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사전협의 요청여부</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미요 청 ()</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요청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협의 요청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의 진행 중</td> <td style="text-align: center;">협의 완료</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head></table> <p>협의요청 사업명</p> <p>복지부 협의결과</p> <p style="text-align: right;">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참조</p> <p>※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 조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 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 행령 제15조제4항)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p> </div>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절 차</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td> <td>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 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 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 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 청 ()	요청 ()			협의 요청 일	협의 진행 중	협의 완료		()	()	절 차	주요 내용	↓	↓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 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 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 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 청 ()	요청 ()																								
		협의 요청 일	협의 진행 중	협의 완료																						
			()	()																						
절 차	주요 내용																									
↓	↓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 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 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 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절 차</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td> <td>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 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보건복지 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 부 사회보장조정과)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절 차	주요 내용	↓	↓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 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보건복지 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 부 사회보장조정과)	↓	↓																
절 차	주요 내용																									
↓	↓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 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보건복지 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 부 사회보장조정과)																									
↓	↓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협의 절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관련부처 (부서)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 (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전문가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 (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협의회 검토·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 * 안건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사·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 </div> <p>2. 협의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절차) <u>협의요청기관의 요청</u>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u>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u>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u>협의회를 운영</u>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자료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보완자료 기간은 협의 기간에 미산입)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관련부처 (부서)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 부처 (부서) 의견조회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전문가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 <u>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2021 협의지원업무 위탁수행)</u>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제도조정 전문위원회 검토·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및 주요 사회보장정책 협의 조정 · 협의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u>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u> · 협의요청기관 사업담당자 참여 및 의견 개진 가능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미산입 · <u>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각 부처 재정부서,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지자체사안에 해당)에 동시통보</u> </div> <p>2. 협의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절차) <u>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처(부서) 및 전문가 그룹(협의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u>하고, <u>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해 협의 쟁점사항 등을 검토</u>하여 최종 협의결과 도출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협의 절차</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협의결과 통보) <생략></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총괄부서(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협의 결과 동시 통보</p> <p>3. 조정의 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p> </div>	<p>- 협의과정에 요청기관의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변경 협의지원 업무 위탁기관(협의지원단)></p> <p>..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p> <p>·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2.30. 위탁사업 승인, 책임연구원: 함영진 연구위원)</p> <p>.. (기간) 2019~2021 (3년)</p> <p>· (업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p> </div> <p>● (협의결과 통보) <생략></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총괄부서(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각 부처 재정부서에 협의 결과 동시 통보</p> <p>3. 조정의 진행</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p> </div>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 협의·조정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 하기 위해 조정의 절차규정 보완</p> <p>-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미성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 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조정을 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p>	<p>●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 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에 조정을 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p>																
	<p>IV. 협의 기준</p>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p> <table border="1" data-bbox="395 1196 836 1877"> <thead> <tr> <th>법정 기준</th> <th>주요 검토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의 타당성</td> <td>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td> </tr> <tr> <td>2. 기존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td> <td>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td> </tr> <tr> <td>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 <td>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td> </tr> </tbody> </table>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p>IV. 협의 기준</p> <p>●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지역복지 활성화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p> <table border="1" data-bbox="874 1196 1315 1877"> <thead> <tr> <th>법정 기준</th> <th>주요 검토항목</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의 타당성</td> <td>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td> </tr> <tr> <td>2. 기존제도와의 관계</td> <td>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td> </tr> <tr> <td>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td> <td>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td> </tr> </tbody> </table>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 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 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95 483 523 524">법정 기준</th> <th data-bbox="523 483 836 524">주요 검토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5 524 523 629">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td> <td data-bbox="523 524 836 629">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td> </tr> <tr> <td data-bbox="395 629 523 770">5. 기타</td> <td data-bbox="523 629 836 770"> ⑭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⑮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⑯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td> </tr> </tbody> </table>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⑮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⑯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74 483 1002 524">법정 기준</th> <th data-bbox="1002 483 1315 524">주요 검토항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74 524 1002 629">4. 재정에 미치는 영향</td> <td data-bbox="1002 524 1315 629"> ⑫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td> </tr> <tr> <td data-bbox="874 629 1002 770">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td> <td data-bbox="1002 629 1315 770"> ⑭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로 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⑮ 지역주민 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⑯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td> </tr> <tr> <td data-bbox="874 770 1002 864">6. 기타</td> <td data-bbox="1002 770 1315 864"> ⑰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⑱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td> </tr> </tbody> </table>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⑭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로 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⑮ 지역주민 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⑯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6. 기타	⑰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⑱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등 중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⑮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⑯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⑭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로 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⑮ 지역주민 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⑯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6. 기타	⑰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⑱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p>2. 기존제도와와의 관계</p> <p>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p>②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선정기준의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p>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p>2. 기존제도와와의 관계</p> <p>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여부 <p>②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 필요한 급여내용(지원수준, 지원방법·수단 등)의 누락·편중 여부 <p>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회보장제도(국가 또는 광역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보충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협의 기준	<p>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p> <p>① <u>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u></p> <p>-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u>재정집행의 효율성</u></p> <p>-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로 특히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5. 기타</p> <p>① <u>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계획</u></p>	<p>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p> <p>① <u>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u></p> <p>- <생략></p> <p>- <u>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여부</u></p> <p>- <u>신설변경 사업의 재원 확보로 인한 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u></p> <p>② <u>재정집행의 효율성</u></p> <p>- <u>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중앙 - 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미치는 영향</u></p> <p>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p> <p>① <u>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u></p> <p>- <u>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반영 여부</u></p> <p>② <u>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u></p> <p>- <u>사업설계 단계에서 복지욕구조사 등 주민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u></p> <p>- <u>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 지역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u></p> <p>③ <u>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u></p> <p>- <u>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위한 노력</u></p> <p>6. 기타</p> <p>① <u>사업목표 달성 여부 등 사후 성과관리 계획 수립</u></p>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수요 반영 및 단발성 사업 최소화를 위한 <u>중장기적 사업추진 노력 정도</u> ② <u>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u>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③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업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u> 등 사후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②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이행 점검	<p>V.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p> <p>1. 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요구 및 제출) <생략>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출 ● (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16년~)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 (2019.12.31.기준) 참조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p>V.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p> <p>1. 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요구 및 제출) <생략>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 협의 결과 확인 의무화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개정(16 ~)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 대상 목록 참조 - 「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9)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이행 점검	<p>-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p> <p>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p> <p>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p> <p align="center">※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4">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전협의 요청여부</td> <td rowspan="2">미요청 ()</td> <td colspan="3">요청 ()</td> </tr> <tr> <td>협의 요청일</td> <td>협의 진행중</td> <td>협의 완료</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협의를요청 사업명</td> <td colspan="4"></td> </tr> <tr> <td>복지부 협의결과</td> <td colspan="4">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td> </tr> </tbody> </table> </div>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협의를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p>- 각 부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에 대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재정당국에 예산 요구</p> <p>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p> <p>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align="center">(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p> <p align="center">※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colspan="4">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전협의 요청여부</td> <td rowspan="2">미요청 ()</td> <td colspan="3">요청 ()</td> </tr> <tr> <td>협의 요청일</td> <td>협의 진행중</td> <td>협의 완료</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협의를요청 사업명</td> <td colspan="4"></td> </tr> <tr> <td>복지부 협의결과</td> <td colspan="4">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td> </tr> </tbody> </table> <p align="center">※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 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p> </div>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협의를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협의를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협의를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신설〉</p> <p>〈p28 내용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한 법령안의 제·개정 시, 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개정(20년~) * 법제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 요청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등을 첨부 하여야 함 ● (지자체사업 협의이행 확인) 지자체 예산 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시행 전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안·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사업 담당 부서 및 예산·법무부서 간 협의이행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 하여 제출 ② (예산·법무부서) 지방의회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행 안내 ('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의 편성절차」 다. 예산의 조정 (p.371) ② 2020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장 조례의 제정 절차」3. 관계기관 협의 (p.2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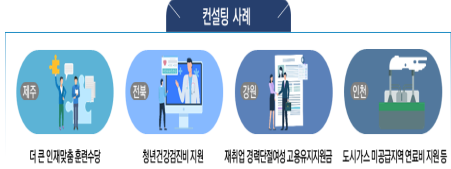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후속 조치	<p>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감액) <생략>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부세 감액) <생략>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생략>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연계) 지자체 단발성·즉흥적 사업 추진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협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시행결과」 평가에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 협의절차 준수」반영*(20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개정 (19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위별 협의이행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지역복지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u><지역사회보장계획></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 및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장기계획(4년 단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수립절차)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후 의회 보고 → 복지부 제출 →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시행결과 평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후 우수 지자체 포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우수사례 발굴) 성실 협의 이행과 협의 기준에 따른 체계적 사업 기획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협의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지원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성과 관리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p> <p>1. 성과지표 활용</p> <p>● (목적) 협의완료 이후에도 협의요청기관이 사업목적·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정 성과지표 선정 및 활용을 위한 지침 제공</p> <p>- 특히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목적임</p> <p>* 2019년부터 신설변경 협의요청 시 협의요청서에 성과지표를 기재하도록 지침에 명시</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요청서 양식〉</p> <table border="1" data-bbox="869 1077 1313 1563">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td> <td>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td> </tr> <tr> <td>제도 신설 필요성</td> <td>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td> </tr> <tr> <td>관련규정</td> <td>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 계획 등</td> </tr> <tr> <td>사업목적</td> <td>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td> </tr> </tbody> </table>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성과지표</p> <p>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p> <p>가. 성과지표명*</p> <p>나. 성과목표치*</p> <table border="1" data-bbox="1018 1742 1299 1823"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2021</td> <td>2022</td> <td>2023</td> <td>2024</td> <td>2025</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p>* 2021년 지침개정 시부터 반영</p> </div>	구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 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구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 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 (그간 성과지표 활용의 한계) 사업설계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표를 채택하는 사례 다수 (예. 참여율, 집행률, 만족도 등)</p> <p>-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 통계청 지역 통계 등 활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안내 및 활용 미흡</p> <p>● (성과지표 개발 및 절차) 협의요청기관이 협의요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점검하여 적정 성과지표 개발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목적 및 상위목표 확인 → (2단계)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 (3단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점검 → (4단계) 목표치의 적정성 점검 →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설정 <p>※ (부록7)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 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목록</p> <p>< 표1. 지역사회보장사업 성과지표 개발절차 ></p> <table border="1" data-bbox="869 1406 1308 1892"> <thead> <tr> <th>단계</th> <th>내용</th> <th>세부 내용</th> <th colspan="2">점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단계</td> <td rowspan="2">목적/상위목표확인</td> <td>사업 목적</td> <td>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상위 목표</td> <td>사업이 상위 정책영역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rowspan="4">2단계</td> <td rowspan="4">단계별 성과지표 설정</td> <td>투입</td> <td>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하고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과정</td> <td>사업과정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산출</td> <td>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결과</td> <td>사업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수반되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 rowspan="2">3단계</td> <td rowspan="2">성과지표 타당성 점검</td> <td>연계성</td> <td>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r> <td>대표성</td> <td>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td> <td><input type="checkbox"/></td> </tr> </tbody> </table>	단계	내용	세부 내용	점검사항		1단계	목적/상위목표확인	사업 목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input type="checkbox"/>	상위 목표	사업이 상위 정책영역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정	사업과정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산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수반되는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단계	내용	세부 내용	점검사항																																		
1단계	목적/상위목표확인	사업 목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input type="checkbox"/>																																	
		상위 목표	사업이 상위 정책영역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정	사업과정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산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수반되는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단계	내용	
			세부 내용	
			점검사항	
			성과지표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인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명과 측정산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며 사용상의 제약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성과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성과분석 및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성과목표치의 달성이 의도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지 적절성		과거추세지, 추진계획, 유사사업, 국제수준과의 비교 및 부처의 개선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5단계			최종성과지표 설정	
< 표2. 성과지표 정의 및 세부 점검기준 >				
단계	구분		정의	
1단계	사업목적/상위목표확인	사업목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상위목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위 정책 목표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지표 유형	투입	예산과 인력 등 자원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량을 보여주는 지표
			산출	사업 완료 이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보여주는 지표
			결과	1차적으로 나타난 산출물 양을 통해 추후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계	구분		점검기준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기준	연계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정책영역별 대표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대표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결과성	성과지표는 궁극적 프로그램 목적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단계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22 477 983 510">구분</th> <th data-bbox="983 477 1318 510">정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83 510 1086 600">정량성</td> <td data-bbox="1086 510 1318 600">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지표 :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td> </tr> <tr> <td data-bbox="983 600 1086 887">명확성</td> <td data-bbox="1086 600 1318 887">성과지표명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명확한가? 측정 산식, 측정 대상 기간,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가 파악하기 용이(목표 대비 실적 형태 및 자의적 지수화 지양)한가?</td> </tr> <tr> <td data-bbox="983 887 1086 1144">측정 가능성</td> <td data-bbox="1086 887 1318 1144">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 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td> </tr> <tr> <td data-bbox="983 1144 1086 1379">인과성</td> <td data-bbox="1086 1144 1318 1379">프로그램범위(대상, 예산 등)를 넘어서지 않는가? 도출된 결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요인 등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 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인지 확인)</td> </tr> <tr> <td data-bbox="983 1379 1086 1574">신뢰성</td> <td data-bbox="1086 1379 1318 1574">제3자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성지표의 경우, 사전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정성지표 :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td> </tr> <tr> <td data-bbox="983 1574 1086 1664">적시성</td> <td data-bbox="1086 1574 1318 1664">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측정대상기간과 평가대상기간은 일치하는가?</td> </tr> <tr> <td data-bbox="983 1664 1086 1727">왜곡성</td> <td data-bbox="1086 1664 1318 1727">목표치 달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td> </tr> <tr> <td data-bbox="868 1727 922 1852">4단계</td> <td data-bbox="922 1727 983 1852">목표치 적절성</td> <td data-bbox="983 1727 1318 1852">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td> </tr> </tbody> </table>	구분	정의	정량성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지표 :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	명확성	성과지표명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명확한가? 측정 산식, 측정 대상 기간,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가 파악하기 용이(목표 대비 실적 형태 및 자의적 지수화 지양)한가?	측정 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 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인과성	프로그램범위(대상, 예산 등)를 넘어서지 않는가? 도출된 결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요인 등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 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인지 확인)	신뢰성	제3자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성지표의 경우, 사전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정성지표 :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측정대상기간과 평가대상기간은 일치하는가?	왜곡성	목표치 달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구분	정의																					
정량성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지표 :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																					
명확성	성과지표명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명확한가? 측정 산식, 측정 대상 기간,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가 파악하기 용이(목표 대비 실적 형태 및 자의적 지수화 지양)한가?																					
측정 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 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인과성	프로그램범위(대상, 예산 등)를 넘어서지 않는가? 도출된 결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요인 등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 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인지 확인)																					
신뢰성	제3자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성지표의 경우, 사전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정성지표 :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측정대상기간과 평가대상기간은 일치하는가?																					
왜곡성	목표치 달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3. <u>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방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모니터링 대상사업 확대 가능 ● (시기) 시범사업 시행 기간 종료 이후 ● (절차) 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평가 시행 후 관련 자료 제출(협의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 검토 후 최종 협의완료 추진 (보건복지부) * 사업유형에 따라 복지부가 협의요청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검토내용)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및 자체 성과평과결과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3. <u>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사례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세부 평가대상·시기·방법 등은 변동 가능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 (시기)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u>사업 개시 시점부터 2년 내 평가실시</u> ● (방법) 협의요청기관의 <u>자체 평가</u> 실시 후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u>사후검증</u>(보건복지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기관) 자체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구원, 대학산학협력단,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평가 수행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지침 안내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협의요청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u>사후검증</u>(메타평가 등) 시행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신 설></p>	<p><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data-bbox="858 521 914 562">구분</th> <th data-bbox="914 521 1042 562">절차</th> <th data-bbox="1042 521 1318 562">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58 562 914 1081"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계획 단계</td> <td data-bbox="914 562 1042 719" style="text-align: center;">대상 선정 및 평가 안내 (복지부)</td> <td data-bbox="1042 562 1318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2년차로 도래되는 사업(사전현황조사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일정 및 평가 수행 지침 안내 </td> </tr> <tr> <td data-bbox="914 719 1042 925" style="text-align: center;">사업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기관)</td> <td data-bbox="1042 719 1318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 기간 동안의 사업 영향 평가 계획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및 수행기관 -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td> </tr> <tr> <td data-bbox="914 925 1042 1081" style="text-align: center;">평가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지원 (복지부)</td> <td data-bbox="1042 925 1318 1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등 평가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필요시 적정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 설정 등 정책 컨설팅 지원 </td> </tr> <tr> <td data-bbox="858 1133 914 1391"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실시 단계</td> <td data-bbox="914 1133 1042 1245" style="text-align: center;">사업 집행 (평가 대상 기관)</td> <td data-bbox="1042 1133 1318 1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집행 (2년차) </td> </tr> <tr> <td data-bbox="914 1245 1042 1391" style="text-align: center;">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 기관 → 복지부)</td> <td data-bbox="1042 1245 1318 13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작성 • 제출서류: 기관 자체 평가 결과서, 참고 자료 등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td> </tr> <tr> <td data-bbox="858 1451 914 1877"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사후증 및 결과통보 단계</td> <td data-bbox="914 1451 1042 1597" style="text-align: center;">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전문기관)</td> <td data-bbox="1042 1451 1318 15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검증 (협업업무위탁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 </td> </tr> <tr> <td data-bbox="914 1597 1042 1776" style="text-align: center;">사후검증 결과 검토 (제도조정전문위원회)</td> <td data-bbox="1042 1597 1318 17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 </td> </tr> <tr> <td data-bbox="914 1776 1042 1877" style="text-align: center;">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td> <td data-bbox="1042 1776 1318 18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협의결과 통보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td> </tr> </tbody> </table>	구분	절차	주요 내용	계획 단계	대상 선정 및 평가 안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2년차로 도래되는 사업(사전현황조사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일정 및 평가 수행 지침 안내 	사업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 기간 동안의 사업 영향 평가 계획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및 수행기관 -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평가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지원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등 평가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필요시 적정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 설정 등 정책 컨설팅 지원 	실시 단계	사업 집행 (평가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집행 (2년차) 	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 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작성 • 제출서류: 기관 자체 평가 결과서, 참고 자료 등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사후증 및 결과통보 단계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검증 (협업업무위탁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 	사후검증 결과 검토 (제도조정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협의결과 통보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구분	절차	주요 내용																						
계획 단계	대상 선정 및 평가 안내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 •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2년차로 도래되는 사업(사전현황조사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일정 및 평가 수행 지침 안내 																						
	사업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집행 기간 동안의 사업 영향 평가 계획서 작성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및 수행기관 -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평가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지원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등 평가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필요시 적정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 설정 등 정책 컨설팅 지원 																						
실시 단계	사업 집행 (평가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집행 (2년차) 																						
	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 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작성 • 제출서류: 기관 자체 평가 결과서, 참고 자료 등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사후증 및 결과통보 단계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검증 (협업업무위탁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 																						
	사후검증 결과 검토 (제도조정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 →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협의결과 통보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행정 사항	<p>VI. 행정 사항</p> <p>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 2020년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p> <p>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생략> ● 지자체 자율적 협의·조정 이행점검 협조 ● <생략></p>	<p>VII. 행정 사항</p> <p>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생략></p> <p>① 사회보장 협의제도 교육 동영상 활용 - 코로나19 등 대면 교육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온라인 교육 활용 - 메인화면 → 전체 메뉴(왼쪽상단)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생략> ● <이행 점검 부분으로 내용이동> ● <생략></p>															
서식	<p>【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p> <p>【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p> <p>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p> <table border="1" data-bbox="491 1393 1307 1883"> <thead> <tr> <th>구 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작성자</td> <td>○○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td> </tr> <tr> <td>신설/변경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 회)</td> </tr> <tr> <td>근거</td> <td><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r> <td rowspan="3">사업 유형</td> <td>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r> <td>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r> <td>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td> </tr> <tr> <td rowspan="2">급여</td> <td>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td> </tr> <tr> <td>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 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 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기</td> <td><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횟수</td> <td>총 _____ 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td> <td><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조사</td> <td><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정</td> <td><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급</td> <td><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후관리</td> <td><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복지 재원</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able>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규모</td> <td>총 _____ 명/가구/개소/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td> <td>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역사회보장계획포 함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_____ 사업번호: _____, 중점사업: _____) <input type="checkbox"/> 비해당</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 내용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_ 회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지 재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able>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지원규모	총 _____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 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_____ 사업번호: _____, 중점사업: _____)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구 분	주요 내용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_ 회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복지 재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 소요재원</td> <td><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__%</td> </tr> </table>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율__%																														
지원규모	총 _____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 함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_____ 사업번호: _____, 중점사업: _____)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p>2. 제도(사업) 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행예정일/ 협약요청일</td> <td>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약요청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도 신설 필요성</td> <td>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규정</td> <td>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업목적</td> <td>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과지표</td> <td>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_____ 나. 성과목표치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약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약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_____ 나. 성과목표치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r> </table>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 협약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약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_____ 나. 성과목표치 _____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21</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2</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표치 _____</td> </tr> </table>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목표치 _____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3 472 555 526">지원 대상</td> <td data-bbox="555 472 662 526">선정기준</td> <td data-bbox="662 472 1310 526">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td> </tr> <tr> <td data-bbox="483 526 555 580"></td> <td data-bbox="555 526 662 580">대상규모</td> <td data-bbox="662 526 1310 580">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td> </tr> <tr> <td data-bbox="483 580 555 633">지원 내용</td> <td data-bbox="555 580 662 633">지원유형</td> <td data-bbox="662 580 1310 633">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td> </tr> <tr> <td data-bbox="483 633 555 687"></td> <td data-bbox="555 633 662 687">지원수준</td> <td data-bbox="662 633 1310 687">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td> </tr> <tr> <td data-bbox="483 687 555 741">전달 체계</td> <td data-bbox="555 687 662 741">지원절차</td> <td data-bbox="662 687 1310 741">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td> </tr> <tr> <td data-bbox="483 741 555 795"></td> <td data-bbox="555 741 662 795">수행기관</td> <td data-bbox="662 741 1310 795">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td> </tr> <tr> <td data-bbox="483 795 555 848">소요 자원</td> <td data-bbox="555 795 662 848">총규모</td> <td data-bbox="662 795 1310 848">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td> </tr> <tr> <td data-bbox="483 848 555 902"></td> <td data-bbox="555 848 662 902">재원별 규모</td> <td data-bbox="662 848 1310 902">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td> </tr> <tr> <td data-bbox="483 902 555 956">사회 보장 정보</td> <td data-bbox="555 902 662 956">필요 정보</td> <td data-bbox="662 902 1310 956">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td> </tr> <tr> <td data-bbox="483 956 555 1010">사건 활용</td> <td data-bbox="555 956 662 1010">연계 방안</td> <td data-bbox="662 956 1310 1010">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td> </tr> </table>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자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 보장 정보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사건 활용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자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 보장 정보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사건 활용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서식	<p>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p> <p>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p>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p> <p>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u> ● <u>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u> ● <u>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 제도에 대한 재정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u> <p>*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 (예, 지방재정분담심의회 심의·의결사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u>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p> <p><생략></p> <p><신설></p> <p><신설></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border: 1px solid #ccc;"> <p> 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 가능성 진단 등 기술 ✓ 신설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신설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자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자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자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div> <p>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협약서, 공문 등) 첨부 <p>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u>지역사회보장 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u> ●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 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구분	개정 전(2020년)	개정 후(2021년)
	<p data-bbox="376 472 754 551">〈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2019.12.31.기준)</p> <p data-bbox="571 674 655 703"><신설></p>	<p data-bbox="863 472 1315 551">〈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 목록 (2020.12.31.기준)</p> <p data-bbox="979 611 1198 640">〈부록3~6 현행 동일〉</p> <p data-bbox="863 674 1315 752">〈부록7〉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p>

CONTENTS

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II. 협의 대상	5
III. 협의 절차	12
IV. 협의 기준	18
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23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26
VII. 행정 사항	35

■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39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47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55
【서식 4】 회신 양식	56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57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59

■ 부 록

【부록 1】 2020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20.12.11. 기준)	63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20.12.31. 기준)	8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95
【부록 4】 주요 재협의 유형 및 사례	96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98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08
【부록 7】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120

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2 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사회보장기본법[법률 제17202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19.1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4.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825호]

제14조(협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법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7.7.>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이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7.>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1., 2020.7.7.>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해야 한다.<신설 2018.5.1., 2020.7.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18.5.1., 2020.7.7.>

II 협의 대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1 사회보장제도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2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부담 수준, 급여내용, 전달체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변경' 예시

- 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
 -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선정기준** 변경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금융재산
 - ③ **연령기준** 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 ④ **가구특성** 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재원조달방법 등의 재원 변경
 - ① 재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 ②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중앙부처 사업에 한함)
- 3)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서비스 형태, 지원기간, 횟수의 확대·축소로 인한 급여내용 변경
 - ①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가구당 연 20만원 → 연 30만원
 - ②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 ③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 ④ 급여 지급기간·횟수 변경 : 1년 분기별 지급 → 5년 분할 지급
-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3 협의 제외 대상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통사항〉

-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률안 및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변동
- (단순예산변동) 보건복지부장관과 기협의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국회·의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 ☞ 예 : '20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21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기간 등 사업내용 동일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 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 사회보장 관련법령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임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 업무 등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등

- (단년도 사업) 사업 시행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년도(1년 이하) 사업 시행 후 종료되는 한시적·일회성 사업
 -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여 단년도 내 일몰되는 사업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
 -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될 경우 협의대상
-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 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등
 - ☞ 예 : 주택화재·생활안전·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 고용 안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대상 경상운영비 지원 등(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인건비·수당 지원 등의 사업은 협의대상임)
 - ☞ 예 : 직무교육 강사료 및 재료비 지원, 홍보·교육(간담회 등)지원, 관련 기관·위원회 운영경비, 회의비 등

〈지자체 사업만 해당〉

* 지역사회보장제도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협의 부담 경감 목적의 협의 대상 제외

-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예산편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실제 수요 대비 매칭된 사업량(지원규모)가 부족하여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등)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 노인일자리(공익활동)에 대한 지자체 추가예산편성 등

☞ 예 : 기 협의완료한 광역-기초 지자체 매칭 사업 중 기초 지자체의 추가예산편성 등

- (중앙사업지침에 소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이 중앙사업지침에 소속되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자체 사업(예산만 집행)의 경우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 단,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변경, 확대 등)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지자체가 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 : ①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지자체 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노인복지사업 지침에 포괄적 가이드라인 참고) 등

- (지자체간 재원분담비율 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기 협의완료한 지자체 사업 중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지원항목·방식, 지원기간·횟수 등) 등의 변경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의 변경

☞ 예 : 도 60%, 시군구 40% → 교육청 20%, 도 40%, 시군구 40% → 도 60%, 시군구 40%

-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지자체 사업 중 정부 사업 기준을 동일 적용하여 신설한 경우, 정부 사업 기준 변동(예,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으로 지자체 사업내용의 변경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단, 지자체 사업 지침 및 관련 조례에 해당 내용 명시)

☞ 예 : 00시 지역형 기초활보장제도 사업 지침에 지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을 준용함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 사업 변동(단계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00시의 동일 내용이 자동 변경되는 경우

- **(보훈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사업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보훈사업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사업 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의 반영여부는 중앙부처 담당 사업과 또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 후 지급(202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업지침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등 참고)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기타 반례 사례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관련 수단·시설·인력 지원 정책**
 - ☞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 (단, 주민 대상 교통비 지원(요금감면 등) 사업은 협의대상임)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사업**
 - ☞ 예 :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등 (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협의대상임)

참고 | 사회보장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등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약사법 등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II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②항)
 - 신설 사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 ☞ 예) 00도가 재정분담비율을 광역 30%, 기초 70%로 정하여 복지부에 신설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00개 기초 지자체의 동의 여부가 명시된 공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광역-기초 지자체 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 요청서(서식 1,2) 제출 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협의요청기한)**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①항)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④항)
 - ☞ 실제 사업추진 시기 및 협의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한(예시: 사업시행 6개월 전)을 두고 협의를 요청하여 사전 협의완료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 단, 사업시행을 바로 앞두고(1~2개월) 요청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반드시 소명하고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③항)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말까지 제출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97)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협의요청 사업명		()	()	()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참조			
※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				

- (협의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제도나 사업의 도입으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 예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이 상당기간 필요한 사업 등
-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⑤항)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자료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 시 수정·보완 (보완자료 기간은 협의기간에 미산입)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2021 협의지원업무 위탁수행)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및 주요 사회보장정책 협의·조정 · 협의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 · 협의요청기관 사업 담당자 참여 및 의견 개선 가능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미산입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각 부처 재정부서,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지자체 사업에 해당)에 동시 통보

2 협의의 진행

- **(협의절차)**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부처(부서) 및 전문가 그룹(협의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통해 협의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최종 협의결과 도출
 - 협의과정에 요청기관의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

〈신설변경 협의지원 업무 위탁기관(협의지원단)〉

-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12.30. 위탁사업 승인, 책임연구원: 함영진 연구위원)
- **(기간)** 2019~2021 (3년)
- **(업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 운영지원 및 제도 개선 등

-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 총괄부서(기획재정부 예산실) 및 각 부처 재정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 *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 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회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 **(협의 종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협의’ 통보 후 **사업추진여부의 미확정 또는 사업미추진** 등의 사유로, 협의요청기관이 **장기간(차기년도 12월말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의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협의절차 종료** (다만, 구체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확정 시 **신규로 협의요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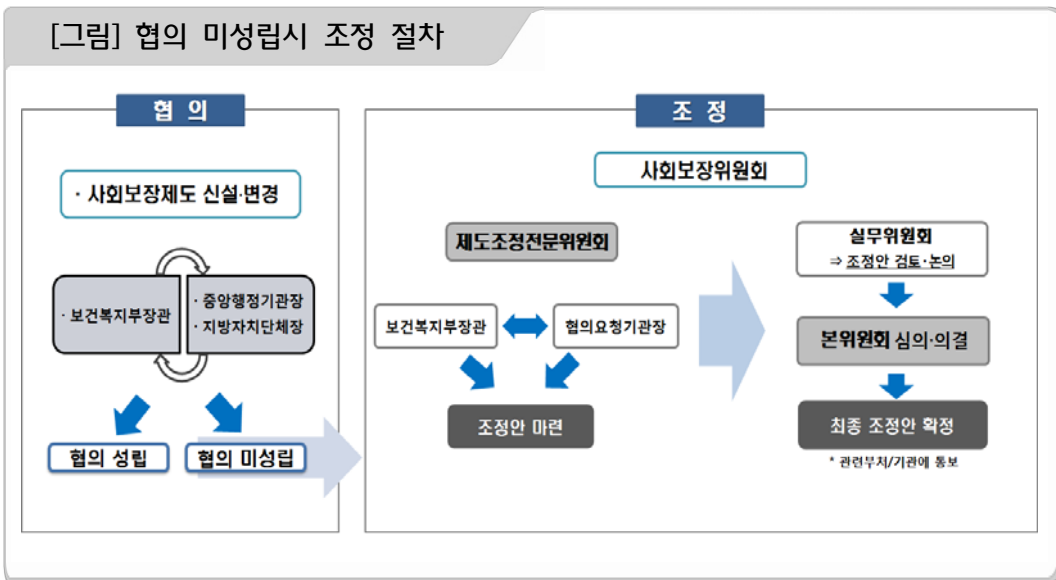
☞ (예시) '19년 3월 00시 협의요청 이후 복지부 '재협의' 결과가 '19년 5월에 통보되었고 고지한 회신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회신을 요청(유선안내 등)하였으나, 다음해 '20년 12월말까지 복지부 검토결과에 대한 00시의 검토의견이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이 담긴 회신(공문)이 송부되지 않는 경우 '20년 12월31일자로 협의절차를 종료(안내 공문 발송)

3 조정의 진행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에 조정을 해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진술 또는 제출 기회 부여(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IV 협의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지역복지 활성화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⑭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⑮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⑯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6. 기타	⑰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⑱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나 경위
 - *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쟁점 여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범위와 규모 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및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 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 특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내용의 적정성 여부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인 경우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협의기관의 분석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여부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동일 목적,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간,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③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 필요한 급여내용(지원수준, 지원방법·수단 등)의 누락·편중 여부

④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기존 사회보장제도(국가 또는 광역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보충적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수급대상자·예산규모·사업량에 비례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②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재원 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 구체적 재정 확보 방안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여부
- 신설변경 사업의 재원 확보로 인한 타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

② 재정집행의 효율성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원 분담에 미치는 영향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반영 여부

②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 사업 설계 단계에서 복지욕구조사 등 주민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 지역 주민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③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을 위한 노력

6 기타

①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 사후 성과관리 계획 수립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등 사후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여부

②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 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V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1 이행 점검

-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등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 협의 결과 확인 의무화
 -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개정('16년~)
 -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 참조
 - 「'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9) 신설·변경 사회보장 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각 부처는 사회보장제도(사업)에 대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한하여 재정 당국에 예산요구
 -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9)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요청 ()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	()
협의를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참조		

※ 협의요청서는 매년 4월 30일까지 복지부 제출이 원칙(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이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도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시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30일 전까지는 복지부와 협의완료 必**

-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과 관련한 **법률안의 제·개정 시**, 사업대상, 선정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개정(20년~)**

* **법제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공문 등을 첨부**하여하 함

- **(지자체사업 협의이행 확인)** 지자체 예산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원활한 협의 절차 이행

-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안·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사업담당 부서 및 예산·법무 부서간 협의이행 여부 확인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② **(예산·법무부서) 지방의회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행 안내 (19년~)**

①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의 편성절차」 다. 예산의 조정 (p.371)

② 2020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 「제2장 조례의 제정 절차」3. 관계기관 협의 (p.22~25)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 9.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16년~)

* (21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준수·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중앙부처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연계) 지자체 단발성·즉흥적 사업 추진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협의 이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에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 협의절차 준수」반영*(20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매뉴얼 개정 (19년~)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사업단위별 협의이행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지역복지과)

〈지역사회보장계획〉

- (개념)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완화 및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장기계획(4년 단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 (수립절차)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심의 후 의회 보고 → 복지부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시행결과 평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후 우수 지자체 포상

- (협의 우수사례 발굴) 성실 협의이행과 협의 기준에 따른 체계적 사업 기획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협의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지원

VI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1 성과지표 활용

- **(목적)** 협의완료 이후에도 협의요청기관이 사업 목적·목표 달성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정 성과지표 선정 및 활용을 위한 지침 제공
 - 특히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목적임
 - * 2019년부터 신설변경 협의 요청 시 **협의요청서에 성과지표를 기재하도록** 지침에 명시

〈협의요청서 양식〉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2021</td> <td>2022</td> <td>2023</td> <td>2024</td> <td>2025</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 2021년 지침 개정 시부터 반영

- **(그간 성과지표 활용의 한계)** 사업 설계 시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지표를 채택하는 사례 다수 (예, 참여율, 집행률, 만족도 등)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 통계청 지역통계 등 활용 가능한 지표에 대한 사전 정보 안내 및 활용 미흡

- (성과지표 개발 및 절차) 협의요청기관이 협의요청서 작성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점검하여 적정 성과지표 개발 도모
 - (1단계) 사업목적 및 상위목표 확인 → (2단계) 사업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 (3단계) 성과지표의 타당성 점검 → (4단계) 목표치의 적정성 점검 →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설정
- ※ (부록7) 정책 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목록

〈 표1. 지역사회보장사업 성과지표 개발절차 〉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사항	
1단계	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사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한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사업이 상위 정책영역 (대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정	사업과정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산출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성과물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수반되는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성과지표는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성과지표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성과지표는 사업의 궁극적인 성과인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성과지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성과지표명과 측정산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며 사용상의 제약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성과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성과분석 및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성과목표치의 달성이 의도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과거추세치, 추진계획, 유사사업, 국제수준과의 비교 및 부처의 개선노력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5단계	최종성과지표 설정			

〈 표2. 성과지표 정의 및 세부 점검기준 〉

단계	구분		정의		
1단계	사업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상위목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위 정책 목표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지 표 유 형	투입	예산과 인력 등 자원 투입량을 나타내는 지표	
			과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량을 보여주는 지표	
			산출	사업 완료 이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보여주는 지표	
			결과	1차적으로 나타난 산출물 양을 통해 추후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과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단계	구분		점검기준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기준	연계성	연계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정책영역별 대표지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가?	
			대표성	도출된 결과지표는 프로그램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결과성	성과지표는 궁극적 프로그램 목적을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성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로 선정되었는가? *정량지표 :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한 지표	
		명확성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은 명확한가?	명확성	성과지표명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 측정 산식, 측정 대상 기간,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제3자가 파악하기 용이(목표 대비 실적 형태 및 자의적 지수화 지양)한가?
				측정가능성	성과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성과측정 데이터 존재 시 사용에 제약이 없는가? 현재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시 수집·생산이 가능한가? 데이터의 수집·생산에 드는 시간·비용은 적절한 수준인가?
		인과성		인과성	프로그램범위(대상, 예산 등)를 넘어서지 않는가? 도출된 결과지표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요인 등에 따라 목표수준 달성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결과 자체는 해당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인지 확인)
				신뢰성	제3자가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반복 측정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정성지표의 경우, 사전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가? *정성지표 :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한 지표
		적시성		적시성	평가 전에 성과측정이 가능한가? 측정대상기간과 평가대상기간은 일치하는가?
				왜곡성	목표치 달성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가?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수준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 예시 1. 지자체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 상위목표 확인	사업목적	만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전세대출금의 2% 이내 이자 지원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5년 간 총 수혜인원 500명, 총 투입 예산 10억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수혜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주거환경 개선 여부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월세 및 대출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이므로 해당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1인당 주거면적을 파악하여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1인당 주거면적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1인당 주거면적을 통해 사업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2015년 기준 중산층 1인당 주거면적이 22m ² 이므로 고소득층 기준인 26.7m ² 에 근접하도록 목표치를 설정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연도</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h>2024</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주거 면적</td> <td>22m²</td> <td>23m²</td> <td>24m²</td> <td>25m²</td> <td>26m²</td> </tr> </tbody> </tabl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주거 면적	22m ²	23m ²	24m ²	25m ²	26m ²	<input type="checkbox"/>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인당 주거 면적	22m ²	23m ²	24m ²	25m ²	26m ²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신혼부부 1인당 주거면적 / 주거면적 증가율														

〈 예시 2. 지자체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상위 목표확인	사업목적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시 기업 및 청년에게 보조금 지원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현업에서 일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에게 고용과 현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고용의 부담을 덜어 궁극적으로 취업률·실업률 제고 가능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지원대상 65명 / 지원 예산 5억 700만원 투입 (기업지원금 월 100만원 6개월, 청년지원금 월 30만원 6개월치 지급)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취업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사업 종료 후 6개월 뒤 구직자들의 취업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실업률 완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표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사업수혜율 및 취업률이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취업률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사업수혜율과 취업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구직 경험을 제공하여 업무교육이 가능하고 이러한 역량이 취업으로 이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사업에 대한 학습효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목표치 상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도</td> <td>2019</td> <td>2020</td> <td>2021</td> <td>2022</td> </tr> <tr> <td>취업률</td> <td>60%</td> <td>62%</td> <td>65%</td> <td>68%</td> </tr> </table>		연도	2019	2020	2021	2022	취업률	60%	62%	65%	68%	<input type="checkbox"/>
연도	2019	2020	2021	2022										
취업률	60%	62%	65%	68%										
5단계	최종 성과지표	(사업 종료 6개월 후) 인턴 수료자 취업률												

〈 예시 3. 지자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

단계	내용	세부내용	점검내용					
1단계	목적/ 상위목표확인	사업목적	학업중단학생의 학업복귀 등을 위한 학습 활동 참여 지원 목적의 교육참여수당 지급	<input type="checkbox"/>				
		상위목표	학업중단률 제고를 통해 교육기본권 확보	<input type="checkbox"/>				
2단계	단계별 성과지표 설정	투입	1년간 약 500명의 학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총 6억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대상자 선정, 수혜 여부 및 효과성 조사	<input type="checkbox"/>				
		산출	지원 사업 수혜자 수의 확대	<input type="checkbox"/>				
		결과	학업중단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3단계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	연계성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참여이므로 해당 지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표성	학업중단률을 파악하여 사업 전체를 평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과성	학업중단률의 경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결과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정량성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정량지표임	<input type="checkbox"/>				
		명확성	학업중단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표임	<input type="checkbox"/>				
		측정가능성	사업담당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과성	학업중단률을 통해 사업효과성 분석이 가능해짐	<input type="checkbox"/>				
		신뢰성	제3자에 의해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적시성	사업 주기별로 매년 측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왜곡성	지표달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부작용 없음	<input type="checkbox"/>						
4단계	목표치 적절성	전년 대비 개선률 평가 (학업중단률이 낮아지면 사업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연도</td> <td>2020</td> </tr> <tr> <td>학업 중단률</td> <td>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td> </tr> </table>		연도	2020	학업 중단률	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연도	2020							
학업 중단률	전년 대비 학업중단률 개선							
5단계	최종 성과지표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 학생 감소율						





2 정책 컨설팅 지원

- (목적) 사회보장사업 설계를 정교화하고 담당 실무자의 기획력 등을 강화하는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컨설팅 지원
- (대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 이전 또는 협의단계에서 전문적 정책 컨설팅이 필요하거나 수요가 있는 사업 추진 기관(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 (방법) 컨설팅 요청 시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을 통해 전문적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 절차〉

절차	주요내용
컨설팅 신청 (사업추진기관→복지부)	· 협의요청서 '접수 전' 또는 '접수 후' 단계에서 신청 및 발굴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공문 신청)
컨설팅 전문가 의뢰 (복지부→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접수된 컨설팅 요청 사업을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
컨설팅 TF 구성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사업 목적,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전문 컨설팅단* 구성 *위탁기관, 지역연구기관, 복지부 협의담당자 등
컨설팅 실시 (컨설팅 TF단 → 신청기관)	· 대면, 서면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컨설팅 실시 (필요 시 컨설팅 회기 분할 가능) · 컨설팅 신청기관 참여 필수
컨설팅 결과통보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신청기관)	· 컨설팅 결과를 취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공문 발송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컨설팅 사례

 <p>제주 더 큰 인재맞춤 훈련수당</p>	 <p>전북 청년건강검진비 지원</p>	 <p>강원 재취업 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지원금</p>	 <p>인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료비 지원 등</p>
-----------------------------------------------------------------------------------------------------------------	--------------------------------------------------------------------------------------------------------------	-----------------------------------------------------------------------------------------------------------------------	-------------------------------------------------------------------------------------------------------------------------

3 사업 영향평가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사업 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사후 관리 추진
 - * 협의사례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세부 평가대상·시기·방법 등은 변동 가능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 (시기)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개시 시점부터 2년 내 평가 실시
- (방법)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평가 실시 후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복지부) 추진
 - (협의요청기관) 자체 평가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역연구원, 대학산학협력단,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평가 수행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 지침 안내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협의요청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메타평가 등) 시행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영향평가 사후관리 절차

구분	절차	주요내용
계획 단계	대상 선정 및 평가 안내 (복지부)	·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른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 시범사업 시행기간이 2년차로 도래되는 사업(사전현황조사 실시) · 평가 시행을 위한 사전 일정 및 평가 수행 지침 안내
	사업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 기관)	· 사업 집행 기간 동안의 사업 영향 평가 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목표 및 평가지표 - 평가방법 및 수행기관 - 평가 결과 활용 계획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구분	절차	주요내용
	평가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 지원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 등 평가 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 필요시 적정 성과지표 및 평가 방식 설정 등 정책 컨설팅 지원
실시 단계	사업 집행 (평가 대상 기관)	· 사업집행 (2년차)
	자체 평가 결과 작성 및 제출 (평가 대상 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작성 · 제출서류 : 기관 자체 평가 결과서, 참고자료 등 * 추후 양식 안내 예정
사후 검증 및 결과 통보 단계	평가 결과 검토 (복지부/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서 사후 검증 (협의업무위탁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성과지표 달성도 - 평가 체계의 적절성 등 · '조건부' 이행 여부 등 점검
	사후검증 결과 검토 (제도조정전문위원회)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를 위원회 상정
	검토 결과 통보 (복지부→대상 기관)	· 최종 협의결과 통보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VII 행정 사항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① 사회보장 협의제도 교육 동영상 활용

- 코로나19 등 대면 교육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온라인 교육 활용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②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③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협의완료사업 조회가능)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번호	협의요청일	요청기관명	분류·제목	협의결과
4257	2019-04-30	전라남도 여수시	신설 다문화가족-세터민 문화바우처 지원11	협의완료
4256	2019-04-30	고용노동부	전소사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반려

④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안내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2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 (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39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47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55
[서식 4] 회신 양식	56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57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59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____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지원규모		총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사회보장계획 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2021</td> <td>2022</td> <td>2023</td> <td>2024</td> <td>2025</td> </tr> <tr>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d>목표치</td> </tr> </table>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자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 제도의 신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제도(사업) 도입 취지·목적과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작성 방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성 방법

-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성 방법

-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력이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 방법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신설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성 방법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신설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성 방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신설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 방법

- ✓ 신설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 신설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 제도의 신설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small>*사회복지예산 중 국비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small>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성 방법

- ✓ 신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 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성 방법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성 방법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지원규모		총 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사회보장계획 포함 여부		<input type="checkbox"/>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16	2017	2018	2019	2020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이후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1	2022	2023	2024	2025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이후					
	지원수준	이전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이후					
	수행기관	이전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이후					
소요 자원	총규모	이전	총 재원규모,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변경 추진의 필요성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작성 방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 제도 변경의 법적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성 방법

-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성 방법

-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이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 방법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성 방법

-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성 방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예, 지방재정부담심 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 방법

- ✓ 변경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 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 제도의 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 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small>*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small>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성 방법

-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성 방법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성 방법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 등)

제도(사업)명

검토결과	협의를료 또는 재협의 등
필수검토사항	협의를요청기관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제도(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i>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작성</i>
복지부 검토의견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2. 신청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제도 신설/변경의 필요성		
관련규정		
사업목적		
성과지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소요 자원 산출	총규모	
	재원별 규모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사업계획 등 참고사항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에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양식 -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각 부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통보

2021. 0

본 컨설팅 수행 내용은 협의지원단 컨설팅 참여진의 전문적 검토 의견입니다.



1. 컨설팅 개요

사업명			
신청 지자체 (기관)		컨설팅 시행일	
컨설팅 회기	___회	컨설팅 방식	<input type="checkbox"/> 대면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서면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유선) 컨설팅

2. 컨설팅 인력 구성 현황 ※ 컨설팅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및 역할	비고

3. 컨설팅 주요내용

사업 개요	
핵심 논의 사항	1. 2. 3.

4. 세부 검토 내용

핵심 논의 사항 (1) :	
컨설팅 내용	1. 2. 3.

본 컨설팅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영림 연구원(044-287-8179, dn5110@kihasa.re.kr)에게 문의 바랍니다.

부 록

[부록 1] 2020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20.12.11. 기준)	63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20.12.31. 기준)	83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95
[부록 4] 주요 재협의 유형 및 사례	96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98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08
[부록 7] 정책영역별 대표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120

【부록 1】

2020년 협의완료(철회·반려 제외) **안건**(2020.12.11. 기준)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	고용 노동부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협의완료	
2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	고용창출장려금(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협의완료
3			○		재취업지원서비스장려금	협의완료
4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협의완료
5				○	저임금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6		고용보험 기획과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협의완료
7		산재보상 정책과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협의완료
8		여성고용 정책과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협의완료
9				○	모성보호 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협의완료
10		인적자원 개발과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협의완료
11		장애인 고용과	○		중증장애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12			○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관 운영 및 진로서비스 연계	협의완료
13				○	장애인 인턴제 운영	협의완료
14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구직촉진수당 인상)	협의완료
15				○	장애인직업능력개발(중증 시청각장애인 훈련지원인 서비스)	협의완료
16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협의완료
17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	교육급여	협의완료
18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지원과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리모델링주택	협의완료
19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협의완료
20			○		공공 리모델링 II 매입임대주택	협의완료
21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협의완료
22		주거복지 정책과	○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협의완료
2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협의완료	
24	금융 위원회	서민금융과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햇살론youth 보증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5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여성 정책팀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협의완료	
26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인 체육과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협의완료	
27	보건 복지부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지급	협의완료	
28		사회서비스 사업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협의완료	
2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예방접종 관리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지원	협의완료	
30	산업통상 자원부	자원안보 정책과		○	에너지바우처	협의완료	
31	여성 가족부	기획재정 담당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협의완료	
32		청소년자립 지원과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협의완료	
33		청소년 정책과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협의완료	
34	해양 수산부	소득복지과	○		여성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협의완료	
35		유통정책과	○		저소득층 수산물 바우처 제공	협의완료	
36	강원	강원도 (본청)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37				○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38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39			○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40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41				○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42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43			삼척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협의완료
44				○		청년 일·경험사회서비스 제공	협의완료
45			속초시	○		강원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46	양구군	○		DMZ 생태·농촌체험교육 운영자 지원	협의완료		
47		○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48		○		어린이집 보육돌봄 청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9	영월군	○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사업	협약완료
50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완료
51		○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협약완료
52	정선군	○		청년주거안정수당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53		○		초고령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이·미용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54	춘천시	○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사업	협약완료
55		○		취업연계형 청년 인턴십 사업	협약완료
56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57		○		학교 밖 청소년 드림프로젝트	협약완료
58	태백시	○		보건위생용품 지원	협약완료
59		○		치매조기검진(감별)진단비 지원	협약완료
60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61	홍천군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완료
62		○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부모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63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특성화비용 부모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64		○		장애인 고용 카페 지원사업	협약완료
65		○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66		○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완료
67		○		홍천사랑 청년정착 수당 지원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68	화천군	○		여성용품 지원	협약완료
69			○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사업	협약완료
70		○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보조	협약완료
71	횡성군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성화,특별활동비)지원	협약완료
72		○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완료
73			○	산후 관리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4	가평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예외지원 확대)	협의완료	
75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76	경기도 (본청)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협의완료 (조건부)	
77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78		○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79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협의완료	
80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협의완료	
81		○		노인 시 친구만들기 사업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협의완료	
82		○		소상공인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협의완료	
83			○	장애인활동지원 도추가24시간 지원 사업	협의완료	
84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협의완료	
85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86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차지원사업	협의완료	
87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협의완료	
88			○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통장)	협의완료	
89			○	청년 면접수당	협의완료	
90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91			○	치매조기검진사업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92				○	한방난임 치료지원 사업 지원	협의완료
93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차지원	협의완료
94	경기도 교육청	○		8대 분야 체험학습 지원	협의완료	
95	고양시		○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협의완료	
96		○		한시적 양육비 지원	협의완료	
97	과천시	○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협의완료	
98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99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100			○	출산 축하 용품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01	광명시	○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협약완료
102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103	광주시	○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04	구리시	○		다자녀가구 지원	협약완료
105		○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06		○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협약완료
107	군포시	○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108		○		청년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09		○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약완료
110	김포시	○		국민기초수급자 이사비 지원사업 신설	협약완료
111		○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	협약완료
112	남양주시	○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학습용스마트기기지원사업	재협약후 완료
113	동두천시	○		동두천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114	부천시	○		부천시 다른 시·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확대 지원	협약완료
115	성남시	○		1인가구 간병서비스 지원	협약완료
116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17		○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118		○		중장년 1인가구 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추진	협약완료
119		○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사업	협약완료
120	수원시	○		장애인활동지원 수원시 추가지원 사업	협약완료
121	시흥시	○		(경기도 외 타 시·도 소재)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122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123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지원사업	협약완료
124	안산시	○		65세 이상 저소득층 시내버스 요금 지원	협약완료
125		○		만65세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협약완료
126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사업	협약완료
127	안성시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28		○		안성맞춤 청사초롱 프로젝트	협약완료
129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130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131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32		○		치매감별검사비지원	협의완료	
133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협의완료	
134	안양시		○	장애인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협의완료	
135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청년인터레스트지원사업	협의완료	
136		○		청년월세지원사업	협의완료	
137		○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 사업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138		양주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예외지원)	협의완료
139			○		장애인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협의완료
140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협의완료	
141	○			장애인활동지원 양주시 추가지원 사업	협의완료	
142			○	출산장려 지원사업 (사업명 변경 및 지원확대)	협의완료	
143	양평군		○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청년활동가 육성 및 지원 사업	협의완료	
144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협의완료	
145	여주시	○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협의완료	
146		○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47		○		아동의료비 지원제도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148		○		아빠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49		○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협의완료	
150	오산시	○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협의완료	
151	용인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152	의왕시	○		의왕청년드든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153		○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협의완료	
154	이천시	○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 사업	협의완료	
155			○	장애인 활동지원 시추가 지원	협의완료	
156	파주시		○	출산축하금 지원확대(출산축하금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협의완료	
157	평택시	○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	협의완료	
158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159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160	포천시	○		장애인 가족 출산지원금 지원	협의완료	
161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62	하남시	○		출산축하 지원 사업 확대	협약완료	
163		○		관외 소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계획	협약완료	
164		○		하남 청년 인턴 사업	협약완료	
165		화성시	○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 사업	협약완료
166			○		무상교통 사업	협약완료
167			○		청소년 꿈디딤카드 지원사업	재협약후 완료
168				○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169			○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 매칭	협약완료
170		거제시	○		청년씨앗통장 지원	협약완료
171	○			거제청년유턴일자리사업	협약완료	
172	거창군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173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협약완료	
174		○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협약완료	
175	경상남도 (본청)	○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협약완료	
176			○	경남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177		○		경남 청년 산업디자인어 육성 프로젝트(교통비)	협약완료	
178		○		경남 청년 산업디자인어 육성 프로젝트(주거임차비)	협약완료	
179			○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	협약완료	
180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신청조건완화)	협약완료	
181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182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협약완료	
183	경상남도 교육청	○		교육정보화(PC) 지원	협약완료	
184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185			○	체육복 구입비 지원	협약완료	
186	고성군		○	다자녀 세대 체험놀이 지원	협약완료	
187			○	전입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188			○	출산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189	김해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	협약완료	
190	남해군	○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협약완료	
191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92		○		청년 씨앗통장	협약완료	
193	밀양시	○		생활스포츠[요가]활성화 자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94		○		신혼(예비)부부 업산제 지원	협의완료		
195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196		○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	협의완료		
197		○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협의완료		
198		사천시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199		산청군		○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이·미용비) 확대	협의완료	
200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01		양산시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202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03				○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204		진주시	○		「중소기업 신규채용청년복지원금」사업	협의완료	
205		창녕군	○		중년층 건강 틀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06			○		창녕군 청년 기(氣)업(up) 일자리사업	협의완료	
207		창원시		○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시간 연장	협의완료	
208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	협의완료	
209			○		아이돌보는 아바 장려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210		통영시	○		청년 바다지킴이사업	재협의후 완료	
211		하동군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212		함안군	○		청년주거지원사업	협의완료	
213			○		함안 정착 청년통장사업	협의완료	
214		합천군	○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 사업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215		경북	경상북도 (본청)	○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협의완료
216					○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협의완료
217				○	경상북도-서울시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협의완료	
218				○	미혼모부 아이행복 보금자리	협의완료	
219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협의완료	
220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221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222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협의완료	
223	경주시			○		교복지원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24	고령군	-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5	군위군	-	○	양육(입학금, 재학)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226		-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227	문경시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8	봉화군	○	-	교복지원	협약완료	
229		○	-	봉화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협약완료	
230		○	-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231		○	-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	협약완료	
232	상주시	○	-	상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협약완료	
233		○	-	시민 스포츠교실(생활체육)활성화사업	협약완료	
234		○	-	중소기업 청년 취업연계 사업	협약완료	
235		○	-	효도수당 지원	협약완료	
236	영천시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237		○	-	스마트제조 청년인력지원사업	협약완료	
238		-	○	우수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	협약완료	
239		-	○	지역기업혁신 청년인재육성사업	협약완료	
240	울릉군	-	○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241	칠곡군	-	○	사립유치원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	협약완료	
242	광주광역시 (본청)	○	-	광주출생육아수당	협약완료	
243		○	-	난임시술비 추가지원	재협약후 완료	
244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 지원	협약완료	
245		-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자체 사업	협약완료	
246		○	-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247		동구	○	-	재능아동 꿈나무 지원	재협약후 완료
248		서구	-	○	“희망아이 출생” 산모산후관리비 지원(대상자 확대 지원)	협약완료
249	○		-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아라!	협약완료	
250	대구	○	-	다자녀가정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251		○	-	다자녀가정 출산축하금 지원(확대)	협약완료	
252		-	○	달서청년 착한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253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달서구 추가지원사업	협약완료	
254		달성군	○	-	장애인활동지원 달성군 추가지원사업	협약완료
255		대구광역시 (본청)	-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256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57	대구광역시 교육청	○		2021학년도 교복구입비 지원	협의완료	
258	동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협의완료	
259	북구	○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260		○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사업	협의완료	
261		○		행복북구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262		서구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구 추가 사업	협의완료
263		수성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성구 구비 추가 지원사업	협의완료
264	중구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지원사업	협의완료	
265	대전	대덕구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	협의완료
266			○		청년퍼실리테이터 양성사업	협의완료
267		대전광역시 (본청)	○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협의완료
268			○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대여사업	협의완료
269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협의완료
270			○		마을학교, 혁신학교 운영	협의완료
271			○		사회혁신 활성화 및 지역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협의완료
272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협의완료
273				○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협의완료
274			○		청년인턴지원 사업(코업에서 사업 분리)	협의완료
275		동구	○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인큐베이팅 외식·카페 운영 사업	협의완료
276		서구		○	공영장려 지원	협의완료
277			○		기업탐방 청년 알잡 사업	협의완료
278			○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279		남구	○		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280			○	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협의완료	
281	동구	○		도시재생시설 활성화 일자리사업	협의완료	
282	동래구	○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283	부산	부산광역시 (본청)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284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285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협의완료
286			○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사업	협의완료
287			○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사업	협의완료
288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89	부산광역시 교육청		○	인공지능(AI) 감성케어 지원사업	협약완료		
290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291		사하구		○	감천문화마을일자리창출사업	협약완료	
292				○	마을재생 청년지원단 운영	협약완료	
29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협약완료	
294		수영구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295		연제구		○	청년행복잡기(job+起) 희망드림단	협약완료	
296		영도구	○		중·고등학교 입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	협약완료	
297		중구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298			○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299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사업	협약완료	
300			○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권 지급	협약완료	
301			○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속옷, 튜살 크림 등 지원 (임산부건강관리용품지원)	협약완료	
302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303	○			향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304	서울	강남구	○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초경선물 지원)	재협약후 완료	
305		강동구	○		다자녀(셋째이상)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306			○		사회적경제 링크업	협약완료	
307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협약완료
308			○			장애인신문보급사업	협약완료
309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310		금천구	○		공공도서관 금천청년사서 사업	협약완료	
311		노원구	○		21세기 리터러시 전인교육 전문가	협약완료	
312				○		노원청년놀이지도사 양성 및 파견	협약완료
313				○		노원헬스가디언즈	협약완료
314			○			미래를 여는 청소년 진로코치	협약완료
315				○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십 양성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16		○		생애 주기별 교육사 양성 파견	협의완료
317		○		세대 상생 청년 활동가	협의완료
318		○		인성교육 폭력예방 지도사 양성 파견	협의완료
319		○		청소년봉사활동 지도사 양성 파견	협의완료
320	도봉구		○	도봉형 아이돌봄서비스	협의완료
32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지원확대)	협의완료
322	동작구	○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협의완료
323	서대문구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수당	협의완료
324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의완료
325	서울특별시 (본청)		○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확대)	협의완료
326			○	2020학년도 교육정보화 지원	협의완료
327		○		65세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협의완료
328		○		건설일용근로자 고용개선 추진 지원	협의완료
32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재협의후 완료
33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협의완료
331			○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확대	협의완료
332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협의완료
333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재협의후 완료
334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335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336		○		월세대출 이자지원사업	협의완료
337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338		서울특별시 교육청	○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339	서초구	○		4차산업 「청년인턴지원」 사업	협의완료
340		○		권역별 육아지원센터+ 운영 강화	협의완료
341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협의완료
342		○		서초영(young) 오케스트라 운영	협의완료
343		○		서초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협의완료
344		○		스마트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디어 제작PD 양성	협의완료
345	성북구	○		문화예술현장에서 보여줄게!	협의완료
346	영등포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의완료
347	은평구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348		○	-	세대결합형 기업 발굴지원	협약완료	
349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협약완료	
350		중구	○	-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협약완료
351			○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352	세종	○	-	세종시 사회복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53		○	-	세종시 수상인명구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54		○	-	세종시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55		○	-	세종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56		○	-	장애청년 미래준비 급여	협약완료	
357	울산	○	○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협약완료	
358			○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협약완료	
359		○	-	사립유치원 다자녀가정 유아학비 추가 지원	협약완료	
360		울주군	○	-	노인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361			○	-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362			○	-	청년 꿈 날개 지원(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협약완료
363	중구	-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364	인천	○	-	강화군 다자녀 보육가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365		○	-	계양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협약완료	
366		○	-	연수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367		인천광역시 (본청)	○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협약완료
368			○	-	공영장려 지원	협약완료
369			○	-	긴급복지 사업	재협약후 완료
370			○	-	드림 For 청년통장	협약완료
371			○	-	소득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	협약완료
372			○	-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협약완료
373			○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협약완료
374			○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지원사업	협약완료
375		○	-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범위 확대)	협약완료	
376		○	-	중증장애인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협약완료	
377		전남	○	-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지원	협약완료
378	○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지원대상확대)	협약완료
379	○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협약완료
380	○			-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81	곡성군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협의완료
382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협의완료
383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384	광양시	○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의완료
385		○		광양시 청년 JOB매칭 사업	협의완료
386		○		미용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387		○		산단 사무국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협의완료
388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 확대	협의완료
389		○		지역 우수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협의완료
390	구례군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협의완료
391	나주시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392			○	저소득층 틀니지원 사업	협의완료
393	담양군		○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	협의완료
394			○	예비부부 영양제 지원사업	협의완료
395		○		치매검사비 확대 지원	협의완료
396	목포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사업	협의완료
397		○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98		○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99	순천시	○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협의완료
400		○		독감 무료 대상 확대	협의완료
40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협의완료
402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협의완료
403		○		출산장려금「순천아이 꿈 통장」지원 확대	협의완료
404	신안군		○	장애재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405			○	찾아가는 낙도 이·미용복지서비스	협의완료
406		○		폭염대비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지원	협의완료
407	여수시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	협의완료
408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409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협의완료
410	영광군	○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협의완료
411	영암군	○		경력단절 예방 징검다리 프로젝트	협의완료
412	완도군	○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413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협의완료
414	장성군	○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415	전라남도	○		가정폭력 가해자 의료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16	(본청)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417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418		○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4대보험료)	협약완료	
419		○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교육생실비)	협약완료	
420		○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교통비, 숙박비)	협약완료	
421		○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5호점) 설치·운영	협약완료	
422		○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사업	재협약후 완료 (사업미추진)	
423		○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4대보험료)	협약완료	
424		○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교육생실비)	협약완료	
425		○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교통비, 숙박비)	협약완료	
426			○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협약완료	
427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협약완료	
428		○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4대보험료)	협약완료	
429		○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교육생실비)	협약완료	
430		○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교통비, 숙박비)	협약완료	
431		○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협약완료	
432		전라남도 교육청	○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 지원	협약완료
433		해남군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434				○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확대)	협약완료
435				○	다자녀가정 지원	재협약후 완료
436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운영	재협약후 완료
437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438				○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439				○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440		화순군		○	결혼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441				○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442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443	고창군	○	.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444		○	.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	협의완료
445	군산시	○	.	저장강박 의심·위기 가구 지원사업	협의완료
446	김제시	○	.	김제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청년이음'	협의완료
447		○	.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448		○	.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449		○	.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협의완료
450		○	.	행복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협의완료
451	남원시	○	.	결혼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452		○	.	난임 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453		○	.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 수수료 지원	협의완료
454		○	.	다문화가족 장학지원	협의완료
455		○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비용 지원사업	재협의후 완료 (사업미추진)
456		○	.	심한장애인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협의완료
457		.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협의완료
458	무주군	○	.	무주군산업연계청년취업지원사업	협의완료
459		.	○	반딧불농특산물청년이나라샤	협의완료
460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461		.	○	청년키움아카데미지원사업	협의완료
462	순창군	○	.	더불어마을살림이' 청년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지원사업	협의완료
463		.	○	발효미생물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협의완료
464		○	.	치매관리 의료비 확대 지원사업	협의완료
465	완주군	○	.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466		○	.	구직청년 정장대여 사업	협의완료
467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협의완료
468		○	.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469	익산시	○	.	다자녀 가족 지원	협의완료
470		.	○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협의완료
471		○	.	산후조리비 지원 자체 사업	재협의후 완료
472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확대 지원사업	협의완료
473		○	.	청년선호일자리 우수기업 맞춤형 연계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74	임실군	○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475		○		거버넌스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	협약완료	
476		○		기저귀 지원 사업	협약완료	
477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478	장수군	○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협약완료	
479		○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협약완료	
480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협약완료	
481		○		장수노인 주택 개보수 지원	협약완료	
482		○		장수외국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운영	협약완료	
48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약완료	
484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일부 지원	협약완료	
485			○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	협약완료	
486		○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487		전라북도 (본청)	○		전북 마이스산업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사업	재협약후 완료
488	전주시	○		면접정장 대여사업 '청춘꿀꿀옷장'	협약완료	
489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사업	협약완료	
490	정읍시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491		○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사업	협약완료	
492		○		노인 목욕권 지원사업	협약완료	
493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494			○	신혼부부 주택 거주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495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약완료	
496	진안군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료비 지원사업	재협약후 완료	
497		○		청년주거비용 지원사업	협약완료	
49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Happy I 정책	재협약후 완료	
499			○	공영장려 지원	협약완료	
500			○	저소득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	협약완료	
501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협약완료
502				○	홀로사는노인 냉·난방비 지원	협약완료
503	충남	금산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504		논산시	○	대학입학전형 응시수수료 지원	협약완료	
505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협약완료	
506			○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07	당진시	○		노인복지코디네이터 양성사업	협의완료
508		○		당진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	협의완료
509		○		소상공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협의완료
510		○		어린이집 통학코디네이터 양성사업	협의완료
511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협의완료
512		○		자동차부품산업 위기 극복 일자리사업	협의완료
513		○		청년 지역제조업 상생 일자리사업	협의완료
514		보령시		○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바우처카드 발급
515			○	다자녀가정 학습용품지원 바우처카드 발급	협의완료
516	○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협의완료
517	○			청년 상생고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518	○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519	○			출산비 지원	협의완료
520	부여군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521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522		○		우수중소·농업분야기업 일자리사업	협의완료
523		○		장애청년 중증장애인 도움사업	협의완료
524		○		청년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사업	협의완료
525		○		청년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	협의완료
526		○		청년 창업지원 사업	협의완료
527		○		축제청년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협의완료
528		○		치매검사비 확대지원 사업	협의완료
529		서천군		○	가족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530	아산시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협의완료
531	천안시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532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533	청양군		○	출산장려금	협의완료
534	충청남도 (분청)	○		공영장려 지원	협의완료
535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협의완료
536		○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537		○		다자녀가정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의완료
538		○		도내 직업계고교생 지역정책 활성화 취업지원 사업	협의완료
539		○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협의완료
540		○		충남(홍성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협의완료
541		○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42	충청남도 교육청		○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PC 지원범위 확대	협약완료
543	태안군	○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544			○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협약완료
545			○	자활성공수당	협약완료
546	홍성군	○		"청년잇슈(ISSUE)"마을 운영사업	협약완료
547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	협약완료
548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549			○	마을 미술관 청년인턴 지원	협약완료
550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완료
551				○	청년창업 네트워크 구축
552	단양군		○	단양농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 활성화 사업	협약완료
553	보은군	○		기업 청년정착 일자리사업	협약완료
554			○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555	영동군		○	저소득 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56	옥천군	○		뉴스타트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협약완료
557			○	옥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협약완료
558	음성군	○		만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협약완료
559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560	제천시		○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및 학자금 지원	협약완료
561			○	산후관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62			○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협약완료
563			○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564			○	제천한방산업 운영 청년인턴 사업	협약완료
565			○	출산지원금 사업	협약완료
566			○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567		증평군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568			○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	협약완료
569	진천군	○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 운영사업	협약완료
570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571			○	효행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572	청주시	○		청주시 전략산업 고급 연구인력 양성사업	협약완료
573			○	청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완료
574	충주시	○		충주 기업 청년채용 지원	협약완료
575			○	충주 바이오GMP 양성과정 운영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76	충청북도 (본청)	○	.	충주 유아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사업	협의완료
577		○	.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	협의완료
578		○	.	LP가스안전지킴이 인력양성 지원	협의완료
579		.	○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580		○	.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협의완료
581		○	.	지역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582		○	.	창업보육 전문매니저 양성사업	협의완료
583		○	.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플랫폼 구축 운영	협의완료
584		○	.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협의완료

【부록 2】

중양부처 사회보장사업 협의대상목록(2020.12.31.기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3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임금피크제지원금
4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5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6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장려금
7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9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1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1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제도
12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지원)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2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2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2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 산재보험급여
2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2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사업
2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2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27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8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9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사업
30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3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지원
3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3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3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지원금
3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3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4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대학생 취업지원관 운영 및 진로서비스 연계
4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인턴제 운영
4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구직촉진수당 인상)
4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중증 시청각장애인 훈련지원인 서비스)
4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4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대부
4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생계비대부
47	교육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48	교육부	대학장학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49	교육부	대학장학과	인문100년 장학금
50	교육부	대학장학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1	교육부	대학장학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52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53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54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5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56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57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58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5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60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61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6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63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교 학비 지원
64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65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6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원
67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6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6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70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7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72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73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영주귀국정착금
74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75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76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77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7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 수당
7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증수당
8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8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8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8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금
84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85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8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87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88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8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병원진료
90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91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92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93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94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 내항여객선, KTX등)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95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96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97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98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9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100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0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10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10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고엽제특별지원
10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0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재해보상금
10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0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0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10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110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1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112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113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국민임대주택공급
114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기존주택전세임대
115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11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11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118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다자녀 매입임대주택·리모델링주택
11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20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공공 리모델링 II 매입임대주택
12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영구임대주택공급
122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장기전세주택공급
12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2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비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상향지원
126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준주택지원(용자)
127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28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2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30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환경개선자금
13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공급
13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3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3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35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136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13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감면(34종)
138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장려금
13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4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4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14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143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4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14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
146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식품 바우처지원 시범사업(시범사업)
147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행복 꾸러미 지원 사업 (시범사업)
14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149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5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51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52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5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5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15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156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시범사업)
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정보화교육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정보접근성제고
1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6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63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6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65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166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16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68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69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17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7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7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준비서비스
17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7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7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7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7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7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7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8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8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8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18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8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85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 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18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8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88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안검진 및 개인수술
18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90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9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92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9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4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9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9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97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9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99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200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20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2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0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지원
206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207	보건복지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208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사업
20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210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21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1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21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21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1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21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양육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등)
21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21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2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계선 아동 자립지원,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22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할린한인지원
22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22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22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225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26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22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22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양곡할인
229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230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3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23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33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3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통합 운영
23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지원
23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23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3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3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40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4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4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일반형 일자리 지원
24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4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45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4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24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4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5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25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25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직업전환지원
25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5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건강검진사업
255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256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 사업
25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58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59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6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6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26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6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6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6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6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6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6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7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관리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7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72	질병관리청	에이즈 결핵관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273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7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75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서비스도우미
276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77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278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79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 (구 보금자리주택신재생보급)
28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28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82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83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
284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8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28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87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288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89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지원
29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9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92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93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94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29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9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97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9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9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300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301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302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303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30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305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30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유해환경개선
307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08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09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310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31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312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313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314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315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16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17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여성기업판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여성창업지원
31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용자)
31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지원
32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321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322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32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32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32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32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32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
32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32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가산금) 제도
330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331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33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장려금제도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33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33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35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가사도우미
336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여성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337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33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339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40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4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석면피해구제급여
34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342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 지원사업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연번	시도명	부서명
1	강원도	복지정책과
2	경기도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6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7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8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0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11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12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13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4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16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1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시도별 배열 순서는 가나다 順

【부록 4】

주요 재협의 유형 및 사례

0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부정적 효과 초래

0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요청내용**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협의결과** 과잉이용 유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재협의

0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요청내용** 영·유아, 노인, 여성농업인 등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협의결과** 과잉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로 재협의

03 민간보험료 지원

- 요청내용** 1세 이하 셋째아 대상 1인당 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 협의결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협의

02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유발

01 장수수당

- 요청내용** 고령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 지급
- 협의결과** 소득에 상관없는 정기적 현금지급은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재협의

02 노인 교통비 지원

- 요청내용** 여가·관광, 운송수단 이용비용 보전을 위한 정액(현금) 지원
- 협의결과**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재협의

03 교육경비 이중 지원

- 요청내용**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동일항목의 교육비(급식비, 교복비 등) 지원
- 협의결과** 동일 지역 내 교육청에서 기 시행 중인 경우 지자체 이중 지원 재협의

03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적합성과 배치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결여

01 사설 학원비 지원

요청내용 초·중고 학생 등에게 사설 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협의결과 입시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사설 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직접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부정책방향(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근절)을 고려하여 공교육 체계 내 타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 권고

02 민간산후조리비용 지원

요청내용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협의결과 산모의 선택권 제한, 민간시장의 가격 왜곡 등의 우려가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재원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기존정책 활용 권고

03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요청내용 출산 산모에게 한방첩약 지원

협의결과 산후조리 목적 한약지원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공공재원투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 기존정책 활용 권고

04 그 외 관련법령 등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회)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청년)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규모	총 5,000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비율100_%	비율_%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를요청일		2017년 ○월(예정) / 2017년 ○월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제도 신설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책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청년지원 조례 제2조
사업목적		일정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성과지표		취업률
지원 대상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 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③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학생 등 일부참여제한 - 구직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는 선정 제외
	대상규모	5,0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카드 발행을 통한 사후 지원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사후 지급 (최대 300만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대상자선정→카드발급→현금지원*→사례관리 * 매월 활동계획 및 결과에 기초하여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
	수행기관	○○○○재단
소요 자원	총규모	165억 원 (지원금 150억, 시스템개발비 5억, 운영비 10억)
	재원별 규모	도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정보, 유사 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수혜 이력(지급실적) 등
	연계 방안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적정보 조회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청년층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 예상

- '16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3.7%인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에 달함.
 청년층 고용률도 '04년 45.2%, '15년 4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치열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유휴화·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
- '9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에코)*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임에 따라 청년들 고용상황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

※ '90년대 초반에 신생아(에코세대)가 매년 70만 명 이상씩 태어남

구분	전국 실업률 (% , %p)				○○○ 실업률 (% , %p)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2000(A)	4.4	8.1	3.5	1.5	3.9	6.2	3.2	2.6
2016(B)	3.7	9.8	2.5	2.7	3.9	9.7	2.6	3.3
증감(B-A)	△0.7	1.7	△1.0	1.2	0.0	3.5	△0.6	0.7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구직활동 제한,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 최근까지 청년층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비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취업실패반복·노동시장진입지연 등 악순환 반복

□ 청년취업 문제는 저소득 청년만이 아닌 청년 쏠 계층의 문제

- 청년취업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견 제기

- 부모의 지원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저소득 뿐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저소득 미취업자	1위(50.1%)	졸업유예자	4위(25.6%)	예비창업자	7위(9.2%)
장기 미취업자	2위(31.8%)	여성 미취업자	5위(16.8%)	구직단념자	8위(7.6%)
모든 청년	3위(28.6%)	무연고 청년	6위(11.6%)	니트족	9위(6.2%)

- 청년들은 현재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취업지원·일자리 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모든 청년”**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도내 청년들의 40% 내외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청년 22%는 부채(평균2,657만원) 보유

※ 부채원인 : 교육비·주거비·생활비 順

알바	주거·생활비	등록금 등	여행·취미	사회경험	저축·목돈	취·창업 스펙	여학연수
비율	45.4%	16%	15.3%	9%	7.8%	5.3%	1.2%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③ 지역의 특수성

- 전국 최대(1/4) 청년인구 거주, 道內 청년층 체감 고용불안정은 전국 최고

- '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18-34세) 인구(1,158.7만명) 대비 ○○ 청년 인구(291.3만명)는 전국의 25.3%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전국	13,365,227	25.8%	100%	○○	865,611	24.8%	6.5%
○○	3,376,584	26.5%	25.3%	○○	815,075	24.2%	6.1%
○○	2,776,839	28.0%	20.8%	○○	790,801	26.9%	5.9%

- 지난 15년('00년-'16년) 간 전국 대비 ○○ 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증감 폭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변화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심각한 상황
 -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p 하락, 반면 ○○ 청년층은 2.4%p 하락
 - 전국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7%p 상승, 반면 ○○ 청년층은 3.6%p 상승
- '16년 ○○○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층(15-29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5.6%로 관내 평균(37.0%) 대비 가장 높고 전국 평균(33.3%) 보다 높음
 - 또한, ○○○는 제조업 등 직종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높아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구직기간도 길어 장기 실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지역적 특수성으로 도내 청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부담 가중

- 도내 청년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장거리 이동(서울 등 외곽)으로 교통비 부담이 크며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청년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33.6%), 높은 피로도(32.7%), 과도한 교통비 지출(20.4%)(월 평균 교통비 11만5천원) 등의 상실감 호소

□ 전국 대비 높은 청년 니트족 규모

- ○○○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을 20-30대가 차지할 정도로 청년비중이 높음
 - 도는 '청년 니트족' 규모(27만6천명)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족'(20만1천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를 비롯하여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니트족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 (서비스 특화) 취성패는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참여자 유형을 취성패 I(기초수급자·저소득층), 취성패 II(청년·증장년)으로 분류 구분함
 -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역량 등급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성과가 낮게 나타남

- **(직업훈련) 청년층**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취업역량이 높아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고 취업지원경로를 살펴보면 **‘1-3단계형’의 취업률(81.6%)***이 높음
 - 또한, 직업훈련 실시 이후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과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일치가 17.75%·**불일치가 82.25%**로 대부분이 **훈련과 다른 직종에 취업**
- **(취업알선) 청년층**은 기초수급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구직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취성패를 훈련지원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경우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

〈타 유사사업과 비교〉

구분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	청년배당 (경기 성남)	청년사회진출사업 (인천)	행복나눔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목적	▶ 사회활동 지원	▶ 기본소득 보장	▶ 면접활동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년 이상 거주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 3년 이상 거주 ▶ 만24세 청년	▶ 취성패 I, II 유형 참여 중인 청년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 연간 100만원 (분기별25만원) ▶ 지역상품권	▶ 취성패 I : 60만원 (월20만원씩3개월) ▶ 취성패 II : 20만원	▶ 총180만원 (온라인포인트&체크)
예산	▶ ('17년) 150억	▶ ('17년) 113억	▶ ('17년) 30억	▶ ('17년) 108억

구분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 수원)	희망이음프로젝트 (충남)	청년복지카드 (경북)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목적	▶ 면접활동 지원	▶ 면접활동 지원	▶ 안정적 생활비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60%이하	▶ 취성패 3단계 참여중인 청년	▶ 도내15~39세 근로자 (근로자 3-99명 이하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거주 ▶ 18~34세 미취업 ▶ 중위소득80%이하
지원	▶ 총18만원 (월3만원씩 6개월) ▶ 1,200명	▶ 1인당 5만원(1회) (포인트&체크) ▶ 500명	▶ 1인당 연간 100만원 (50만원씩 2회 지급) (선불카드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예산	▶ ('17년) 2억1600만원	▶ ('17년) 5천만원	▶ ('17년) 20억	▶ ('17년) 165억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정책 사각지대 해소) 취성패 미참여자 발굴

- (사업취지) 정부의 고용보험과 취성패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현금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성패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청년층 중에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 <OECD 청년행동계획 우선 지원대상(14년)> : 청년니트, 신규졸업자,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
- (기본방향)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
 - ○○○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의존을 야기하지 않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 (지원대상) 청년층에 대한 포괄지원이 아니라 ①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중 ②취성패 사각지대에 있는 ③구직의지가 높은 근로능력자를 선발
 -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사업 참여 제외>

-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최종 학기)·방통대·야간 대학원생 참여 가능)
-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③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통계청 “시간제 근로자” 정의 :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2017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150%(B)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보험료 (B*0.0306)	75,870	129,183	167,118	205,053	242,987	280,922

- ※ 중위소득(A)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7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16.7.22.)
- ※ 0.0306 : '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율
- ※ 취업성공패키지 | 유형은 중위소득 60%×0.0306적용(직장·지역가입자 동일 적용)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월50만원 지원 금액 산출근거〉

- ①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17.1월) :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44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 ②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조사」('16년) 결과 :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5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 ③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13.11월) : 구직지원 참여수당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11년 월2,032천원)의 20%, 최저임금('11년 월903천원)의 44% 수준인 **월40만원** 정도를 시행 첫해('11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평균 5%로 가정하여 참여수당을 인상 조정**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원)	394,000	413,700	434,385	456,104	478,909	502,855	527,998

□ 지원방법

- '○○○' 카드 발급,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형태로 사후 지원**

※ 참여자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후에 보완적으로 온라인 검증 및 정산 실시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전혀 없으며, ○○○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 본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55.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E)
55.2	13,958,263	7,704,726	6,253,537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7.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E)
57.2	13,958,263	7,986,387	5,971,876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사회보장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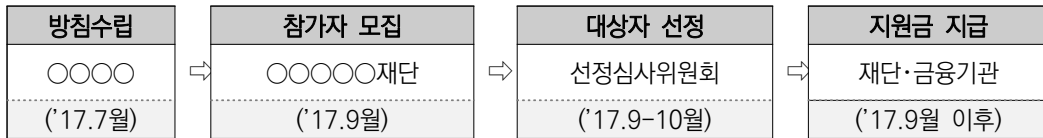
- 2016년도 ○○○○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비율은 34.4%임

〈 ○○○○ 재정 여건 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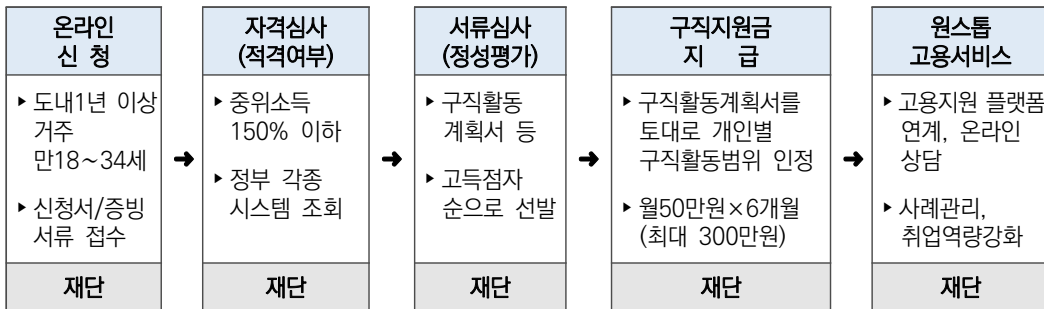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도	55.2%	57.20%	34.4%
2015년도	53.6%	55.00%	34.7%
2014년도	53.7%	56.00%	32.3%
2013년도	60.10%	62.20%	31.7%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지원체계) ○○○○ 및 ○○○○재단 등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
 - ○○○○ : 총괄운영·관리, ○○○○재단 지도·감독,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재단 :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연계·협력 등



- (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 신청 접수, 서류심사, 오디션 실시, 지원금 지급 등 고용서비스 일체를 ○○○○○○재단에서 원스톱으로 진행



- (사례관리) 전담 상담사가 온라인(고용지원플랫폼) 및 오프라인에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예산 (억)	185	45	70	70
지원인원 (명)	5,000	1,000	2,000	2,000

※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 ○○○○ 100% 예산으로 조달 (‘17년 일반회계 165억원)
- 정책의 지속가능성 : 기 사업은 민선6기 대표적인 ○○합의과제이며, 전액 ○○비 100%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1 회)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보건의료 091)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회성 (출산 시)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정보원)
재원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규모	총 3,399 명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2018.01.01.(협약요청일 2017.10)			
제도 변경사유		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대상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는 2017년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지원 확대, 이후 점진적인 대상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지원하고자 함			
관련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성과지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영향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이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대상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6,795명	6,779명	6,846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후	변동없음		
	지원수준	이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정부지원금 중 출산순위가 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라형 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17년 기준 최소 501,000원~최대 1,418,000원)		
		이후	상동 ('17년 기준 최소 278,000원~최대 1,418,000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보건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 접수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계약·본인부담금 납부(신청인) →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지급(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수행기관	이전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소요 자원	총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	-	1,212,173천원
		이후 (변경 후 3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72,966천원	1,997,266천원
재원별 규모	이전	시비100%			
	이후	변동없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건강보험 자격정보, 건강보험 납부금액, ○○○ 전입일			
	연계 방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 필요성

● 비싼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은 234만원(우리시 258만원)으로 출산가정에 큰 부담이지만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
-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모·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위험 등의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함.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 기혼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출산정책 욕구도 조사 결과 **출산지원 분야의 최우선 정책은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69.7%**로 매우 높음.(’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지원 정책욕구도 조사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65%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가구가 적어 **기존 제도로는 출산지원 욕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
- 정책욕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지원율¹⁾이 ’15년 9.7%, ’16년 13.6%에 불과, **정책 욕구도 충족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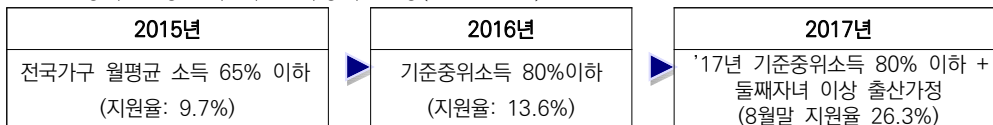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1)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text{출생아수}} \times 100$, ('15년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 898명}}{\text{출생아수 9,296명}} \times 100$, '16년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 1,136명}}{\text{출생아수 8,364명}} \times 100$)

③ 지역의 특수성

- ○○○는 빠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 ○○개 시·군 가운데 출생아수가 세 번째로 많고('16년 기준 8,288명), 가임기여성(20~44세)의 수가 네 번째로 많아('16년 186,008명)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는 ○○○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개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으며,(○○시 전체인구의 23.4%) 하루 평균 5.2명이 출생하는데 반해 산후조리원은 3개소(53객실)로 매우 부족한 상황.
- ○○○는 하루 평균 8.6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총 7개의 산후조리원(총 129객실)이 있음. 3개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율이 8.7%(2016년 기준)로 매우 낮음.
- '16년 12월말 기준 ○○○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일반실 2주 기준, 단태아) 259만원으로 ○○○ 00개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비싸고(1위 ○○시, 2위 ○○시, 3위 ○○시), 전국 130개 시·군·구 가운데 27번째로 많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16. 12월 기준))
- ○○○는 2017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지원 하였는데, 지원율이 전년대비 12.7% 상승, 또한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²⁾될수록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산후조리원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이용비용이 높고, 화재발생 및 신생아 집단감염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가계의 경제비용을 분담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15~'17년)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급여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접수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 차단 및 유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사서비스 포기 동의서” 징구

-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형식으로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예정)후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이혼한 부모에게 출산 전·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최소 39%~최대 88%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출산지원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며,
- ○○○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비용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의 목적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구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쌍태아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구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278,000 (5일)	464,000 (10일)	591,000 (15일)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쌍태아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가격 중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지원금에 따름.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서비스, 1주 5일, 1일 9시간 제공(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변동없음)
- 급여 유형 :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변동없음)
- 조사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모의 ○○○ 전입일 확인 (변동없음)

● 향후 5년간 대상자 규모

- ○○○ 5년간 장래인구추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인구수	975,746	991,126	1,006,588	1,017,962	1,028,752	1,038,731	1,046,522	1,053,743	
출생아수 합계	9,296	8,364	8,153	8,042	8,024	8,102	8,163	8,114	
단태아	소 계	8,964	8,065	7,862	7,754	7,737	7,812	7,871	7,824
	첫째자녀	4,507	4,055	3,953	3,899	3,890	3,928	3,958	3,934
	둘째자녀	3,629	3,265	3,183	3,139	3,132	3,163	3,186	3,167
	셋째자녀 이상	791	711	694	684	683	689	694	690
	미상	37	34	32	32	32	32	33	33
쌍생아(쌍태아)	소 계	161	145	141	140	139	141	142	141
	둘째자녀	115	104	101	100	100	101	102	101
	셋째자녀 이상	46	41	40	40	39	40	40	40
삼태아이상(쌍)	3	3	3	3	3	3	3	3	

- 1) ○○○ 인구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 주요인구지표(중위 추계) 중 ○○○ 인구성장률(%) 적용 ('17년 1.56%, '18년 1.13%, '19년 1.06%, '20년 0.97%, '21년 0.75%, '22년 0.69%)
- 2) 출생아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2016),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산율 현수준 추계) 중 출생율(인구천명당) 적용 ('17년 8.1, '18년 7.9, '19년 7.8, '20년 7.8, '21년 7.8, '22년 7.7)
- 3) 단태아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순위별 출생 중 2016년 ○○○ 출산순위별 비율 적용 (첫째자녀 50.3%, 둘째자녀 40.5%, 셋째자녀 이상 8.8%, 미상 0.4%)
- 4) 쌍생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쌍태아 및 월별 출생 중 '15년 ○○○ 출생아수 대비 쌍생아 비율 3.47% 적용
- 5) 쌍생아 출산순위별 비율 : ○○○ 2017년 7월말 기준, 바우처 신청자 중 쌍생아의 출산순위 비율 적용(둘째자녀71.69%, 셋째자녀 이상 28.3%)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대상자 규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대상자수	7,865	1,070	6,795	7,847	1,068	6,779	7,924	1,078	6,846	7,983	1,085	6,898	7,935	1,080	6,855	
단 태 아	소 계	7,722	1,050	6,672	7,705	1,048	6,657	7,780	1,058	6,722	7,838	1,065	6,773	7,791	1,060	6,731
	첫째자녀	3,899	530	3,369	3,890	529	3,361	3,928	534	3,394	3,958	538	3,420	3,934	535	3,399
	둘째자녀	3,139	427	2,712	3,132	426	2,706	3,163	430	2,733	3,186	433	2,753	3,167	431	2,736
	셋째자녀 이상	684	93	591	683	93	590	689	94	595	694	94	600	690	94	596
쌍 생 아 (쌍)	소 계	140	19	121	139	19	120	141	19	122	142	19	123	141	19	122
	둘째자녀	100	14	86	100	14	86	101	14	87	102	14	88	101	14	87
	셋째자녀 이상	40	5	35	39	5	34	40	5	35	40	5	35	40	5	35
삼태아이상(쌍)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 대상자수 = 출생아수 - 국비지원자수(총 출생아수 중 2016년 지원을 13.6% 적용)

- 예상 지원자수 (이용률 50%적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수	3,399	3,390	3,425	3,450	3,429	
단 태 아	소 계	3,337	3,329	3,362	3,387	3,366
	첫째자녀	1,685	1,681	1,697	1,710	1,700
	둘째자녀	1,356	1,353	1,367	1,377	1,368
	셋째자녀이상	296	295	298	300	298
쌍 생 아 (쌍)	소 계	61	60	62	62	62
	둘째자녀	43	43	44	44	44
	셋째자녀이상	18	17	18	18	18
삼태아이상(쌍)	1	1	1	1	1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소요예산 : **약 19억 7,296만 6천원**

● **예상지원자수 : 총 3,399명**(단태아 3,337명, 쌍태아 이상 62명 / 이용률 50%로 산출)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50%적용

- ○○○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번째로 높고 2017년 채무제로 선언 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둘째자녀 확대지원을 위해 12억 1,200만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고, 2018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관련부서와 20억 이상 자체예산 편성에 잠정 협의하였으므로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모자보건사업이 대부분 소득기준이 있고(청각선별검사 쿠폰발급: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영양플러스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출생아 수 (A)	국가 지원 (B)	예외지원 (C=A-B *50%)	**이용비율(%)			산출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총 계	7,865	1,070	3,399	32	30	38	724	1,441	1,234	393,679	751,445	827,842	
단 태 아	소 계	7,722	1,050	3,337	21	43	36	712	1,428	1,197	384,109	739,338	791,325
	첫째자녀	3,899	530	1,685	4	62	35	61	1,039	585	16,958	482,096	345,735
	둘째자녀	3,139	427	1,356	36	24	40	487	323	546	243,987	202,198	387,114
	셋째자녀 이상	684	93	296	55	22	22	164	66	66	123,164	55,044	58,476
쌍 생 아 (쌍)	소 계	140	19	61	19	19	62	12	12	37	9,570	10,856	36,517
	둘째자녀	100	14	43	13	18	68	6	8	29	4,074	6,784	27,869
	셋째자녀 이상	40	5	18	33	20	47	6	4	8	5,496	4,072	8,648
삼태아이상(쌍)	3	1	1	-	100	-	-	1	-	-	-	1,251	-
합 계							3,399명			1,972,966천원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180일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60% 적용

** 이용비율(%) : 2017년 7월 말 기준, 태아유형별, 출산순위별 서비스 이용자수 비율 적용

- ✓ 2013~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8%
- ✓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1%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4%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출산가정 확대, 7월말 기준 지원율 약 26%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비율)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62%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00 (50.26)	1,881,559 (1,881,559)	1,166,623 (945,664)	714,936	0	0 (220,959)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3.79	61.44	60.75 (54.82)	61.92 (54.78)	63.42 (58.10)
최종예산	60.52	62.50	58.92 (50.29)	62.00 (50.26)	-

☞ 우리시는 자체세입액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63.42%로 유사단체 평균 51.46%에 비해 11.96%높음.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 75.17%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17% (63.43)	1,881,559 (1,881,559)	1,414,428 (1,193,468)	467,132	0	0 (220,959)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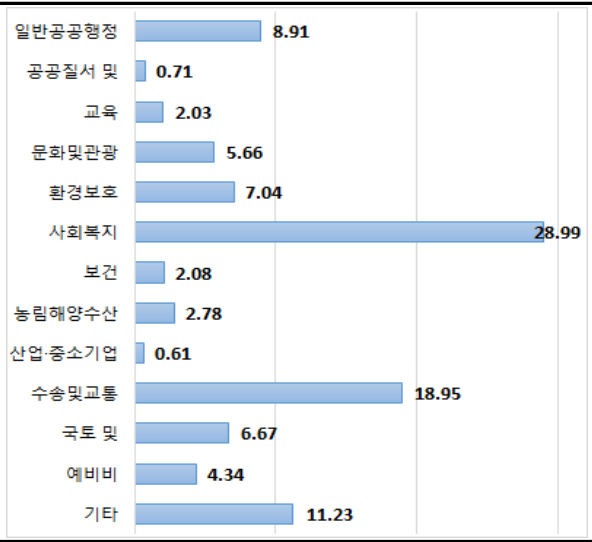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8.25	74.14	73.19 (67.26)	74.80 (67.66)	75.39 (70.08)
최종예산	74.52	75.18	74.95 (66.32)	75.17 (63.43)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5.99% 높은 75.39%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 기능별 세출총괄표(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비율
계	15,107	100
일반공공행정	1,346	8.91
공공질서 및 안전	107	0.71
교육	307	2.03
문화 및 관광	855	5.66
환경 보호	1,063	7.04
사회 복지	4,380	28.99
보건	314	2.08
농림해양수산	420	2.78
산업중소기업	92	0.61
수송 및 교통	2,863	18.95
국토 및 지역개발	1,007	6.67
예비비	656	4.34
기타	1,697	11.23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없음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또는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입일 확인서류 제출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 전입일 확인(행정정보공공이용 활용)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해당기관과 상담 • 상품선택(선택권 행사),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계약체결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사항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개시일부터 선택 상품기간동안 바우처 이용 • 제공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 결제
비용 예탁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비용 중 지원금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비용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계좌로 서비스비용 지급

● 확대지원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부담 증가 및 제공인력 부족

- 제공업체와 간담회 개최, 확대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인력 채용 협조

※ 현재 등록 제공기관 20개소, 제공인력 354명

○○구		○○구		○○구		○○구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20개소	354명	5개소	116명	11개소	168명	4개소	70명

●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 보건소별 인력 증원 요청 ⇄ 인사부서와 협의 후 인력 총원

●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

필요 정보 항목	기능
신청자 및 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열람 대체 및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확인
대상자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조회 등에 필요
대상자 및 대상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구분(직장/지역)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바우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 조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 원 : 일반회계, 시비100%

● 제도 변경 향후 5년간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소 계	3,337	1,914,772	3,329	1,939,244	3,362	1,988,084	3,387	2,032,888	3,366	2,050,220	
단 태 아	첫째자녀	1,685	844,789	1,681	855,558	1,697	876,421	1,710	896,262	1,700	903,774
	둘째자녀	1,356	833,299	1,353	844,244	1,367	866,167	1,377	885,783	1,368	893,396
	셋째자녀 이상	296	236,684	295	239,442	298	245,496	300	250,843	298	253,050
쌍 생 아 (쌍)	소 계	61	56,943	60	56,752	62	59,646	62	60,544	62	61,448
	둘째자녀	43	38,727	43	39,297	44	40,886	44	41,500	44	42,120
	셋째자녀 이상	18	18,216	17	17,455	18	18,760	18	19,044	18	19,328
삼태아이상(쌍)	1	1,251	1	1,270	1	1,289	1	1,308	1	1,328	
합계(명, 천원)	3,399	1,972,966	3,390	1,997,266	3,425	2,049,019	3,450	2,094,740	3,429	2,112,996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중 서비스 물가상승률 1.5% 반영('17년 4월 기준)

● 제도 변경 전·후 예산 증감수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 예산 (천원)	변경 전	1,128,177	1,141,708	1,172,598	1,198,478	1,209,222
	변경 후	1,972,966	1,997,266	2,049,019	2,094,740	2,112,996
증감률(%)		74.9%	74.9%	74.7%	74.8%	74.7%

- ○○○는 2017년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하여 채무제로 도시로 선언하였고,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저출산 극복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재정 분담을 위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기준 완화 건의

【부록 7】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용별 세부지표 예시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돌봄	영아 (출산)	- 합계 출산율	통계청 인구조사	영아 출산지원 (의료, 현금,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인구증가율(시도/시/군/구)
				영아 돌봄 및 보육관련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총족률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아동 (보육)	- 유아/아동 돌봄서비스 수혜비율 - 1인당 돌봄 프로그램 비율 및 서비스 인원 수	지역사회보장지표	질병 예방	영유아 완전 접종률
					만 12세 여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률
				돌봄 서비스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시도/시/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 (정성평가)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보육교사 이직률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청소년 계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나홀로 아동' 비율				
장애 아동 관리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총족률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성인 (요양)	- 장애인/노인 인구 돌봄 서비스 수혜 비율 - 1인당 요양 기관 및 서비스 인원 수	지역사회보장지표	복지영역 확대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장애 돌봄	자활참여자 성공률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만족률
				노인돌봄	독거노인 보호율
					노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노인 서비스 인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율					
고용	안전망	- 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보험가입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시도)
	취업	- 취업률 / 고용률	지역사회보장지표	취업률	구직급여 신청자수(시도) (하향지표) 공공취업지원기관의 취업자 수 달성률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 자체사업)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률 달성도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이행률 장애인 취업률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취업 제도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II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률·모집률			
					고용복지+센터 연계서비스 활성화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고용률(기업지원)	사회적기업 고용률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중소기업, 제조업 고용률			
				노인/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노인 일자리 사업 (재)참여율								
교육	유초 중교	- 기초학력미달 비율, 학업 중단율	교육부 학업성취도 결과 지역사회보장지표	인프라	학급당 학생수(시도/시/군/구)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시도/시/군/구)			
				학업률 개선	고등학교 학업중단율(하향지표)			
	고등 교육	- 대학 진학률 / 졸업률 / 취업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	청년 삶의 질 개선	청년실업률(시도) (하향지표)			
					평생 교육	- 1인당 평생 학습 프로그램 수	지역사회 보장지표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 활성화
소득 빈곤	소득 지원	- 소득증가율, GRDP 개선율, 상대 빈곤율, 지니 계수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소득	주관적소득수준(시도)			
					1인당 지역총소득(시도)			
					1인당 개인소득(시도)			
	연금	- 1인당 연금 가입률 / 수혜액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연금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건강	신체	- 시군구 별 기대 수명 / 건강 수명	건강형평성 학회 건강격차 조사, 통계청 인구표	수명	기대여명(시도)
				건강 관리 지표	규칙적 운동 실천율(시도)
					비만율(시도/시/군/구)
					흡연율(시도/시/군/구)
					음주율(시도/시/군/구)
	고위험음주율(시도/시/군/구)				
정신	- 질병유병률 (2주간 질병 상태 경험자)	통계청 사회조사	건강	주관적 건강수준인자율(시도/시/군/구)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인지율(시도/시/군/구) (하향지표)	
- 인구 천명당 우울증 경험율 및 자살자 수	일본 국민 건강 통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자살률		인구십만명당 자살률(시도/시/군/구) (하향지표)	
		주거 안정	- 인구 천 명당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자료	주거 면적
주거 비용	주택보급률(시도)				
	아파트매매가격지수(시도/시/군/구)				
	아파트전세가격지수(시도/시/군/구)				
주거 환경	- 1인당 주거 면적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조사	주거환경 현황	1인당 도시지역면적 현황(시도/시/군/구)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주거환경 인식	주거비 부담 인식률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문화 여가	문화 예술	문화예술 관람율 / 참여율	문체부 국민여가 활동 조사	문화 인프라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시도/시/군/구)
				문화 프로그램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공공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및 인지율
				직장 문화 개선(지역)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체육	스포츠 관람율 / 생활체육 참여율	문체부 국민생활체육 조사	스포츠 인프라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시도)
				스포츠 참여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우수사례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현황(시도)
	여가 관광	- 평균여가 시간 - 1년간 여행자 비율	문체부 국민여가활동 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기타	여가활용 만족도(시도)
				여가 확대	해외여행경험및횟수(시도)
보호안전	- 범죄율	검찰청 범죄통계연보		보호안전관리 인프라 역량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주민수(시도)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소방서 1개서당 담당주민수(시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 관리율
				범죄건수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시도)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발생건수(시도)
				사고율 / 사망률	어린이 사고 사망률
					아동 십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시도)
					지방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증감률
				질병 관리	식중독 저감률 및 원인 규명률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투입 예산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안전 교육	소방안전교육 이수율(시도)				
- 학대 아동/노인 발견률	지역사회보장지표	학대 아동/노인 관리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	
				단위인구 당 안전신고율	

대분류	소분류	대표 성과지표	자료 출처	사업내용	지표
환경		-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환경부 대기환경 연보	대기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우수사례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가 노력한 우수사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친환경자동차 확산
				환경오염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환경오염 실태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 1인당 녹지/공원 면적	지역사회보장지표	녹지면적	녹지환경 만족도(시도)	
기타	혼인률	통계청 사회조사	-	-	

협의제도 관련 문익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이스트동 10층

■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자료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메인화면 → 전체메뉴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 시스템 주소 : <http://www.ssc.go.kr/main.tiles>